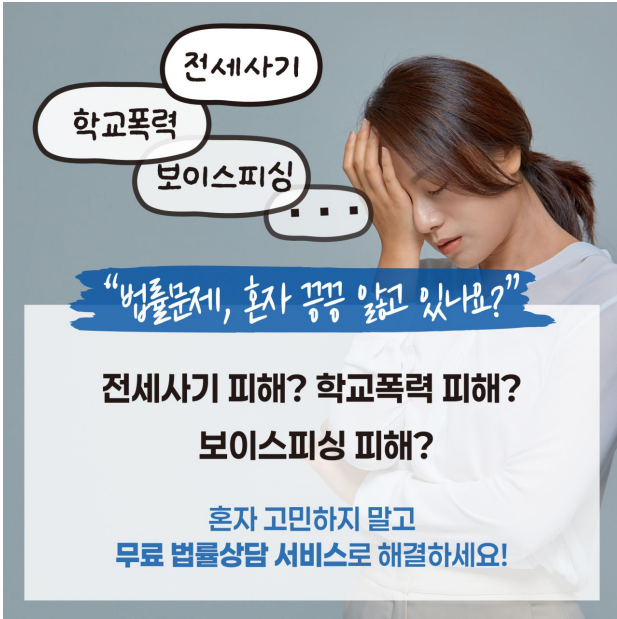


생활에 유익한 법무상식

무료법률상담 이용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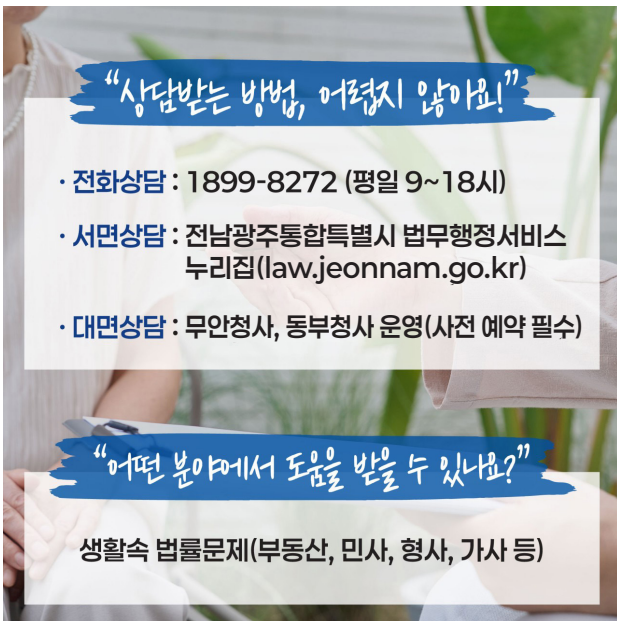


전세사기
학교폭력
보이스피싱
...

“법률문제, 혼자 끔찍 앓고 있나요?”

**전세사기 피해? 학교폭력 피해?
보이스피싱 피해?**

혼자 고민하지 말고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로 해결하세요!



“상담받는 방법, 어렵지 않아요!”

- 전화상담 : 1899-8272 (평일 9~18시)
- 서면상담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누리집 (law.jeonnam.go.kr)
- 대면상담 : 무안청사, 동부청사 운영(사전 예약 필수)

“어떤 분야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생활속 법률문제(부동산, 민사, 형사, 가사 등)



전남광주통합특별시민이라면 누구나!
무료 법률상담 신청 GO!

주민조례청구 이용 안내



주민조례 발안제도란?

- 일정 수 이상의 주민들이 연서(서명)로 지방의회에 주민들이 직접 만든 조례안의 발의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주민조례청구는 제도가 시행된 2000년부터 지난 2024년까지 총 436건이 접수되었습니다. 특히 별도 법률인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시행 (22년~) 이후 아동돌봄, 안전한 식재료 공급, 청년복지, 노동자 인권, 안전진진 등 청구 주제가 다양해지고 청구건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청구제외 대상(제4조) 이외에는 어떤 주제든 조례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청구제외 대상) 1.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2. 지방세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부과 징수 또는 감면하는 사항, 3.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4.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기존의 조례 내용과 중복되지 않는 내용으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주제나, 행정의 공백을 보완하는 제도의 도입 등 지역주민의 공감대가 형성된 내용으로 청구될 경우, 서명 참여를 보다 활발히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주민조례청구 진행절차



청구서·조례안 제출 및 대표자 증명서 발급 신청
(대표자→지방의회)



대표자 증명서 교부, 청구취지 등 공표



서명요청, *시·도 6월 이내 / 시·군·구 3월 이내
청구인명부 제출(서명요청 기간 경과 후) *시·도 10월 이내 / 시·군·구 5월 이내



청구인명부 관련 공표, 열람 및 이의신청
* 공표한 날부터 10일 간



청구요건 심사, 수리여부 결정 및 통지
(열람 및 이의신청 절차 종료 후 3개월 이내)



주민청구조례안 발의(의회의장 명의)
* 수리 후 30일 이내



심의·의결
* 수리 후 1년 이내 * 본회의 의결로 1년 연장 가능



집행부 이송 및 조례 공포

청구인(대표자) 할 일 **파란색**

지방의회 할 일 **검정색**



어떻게 청구하나요?

-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 주민(선거권 없는 자 제외) 가운데 대표자를 선정하여 해당 지방의회에 대표자증명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 신청기관** : 지방의회(대표전화로 문의)
 - 신청서류** :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서, 주민청구조례안
 - 신청방법** : 서면 또는 전자(주민e직접 플랫폼, juminegov.go.kr) 청구
- 대표자 증명서 발급 후, 청구인명부에 조례 청구에 필요한 일정 수 이상의 주민 서명(시·군·구별, 읍·면·동별 작성)을 받아 해당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
 - 서명기간** : 지방의회의 의장이 대표자 증명서 발급 후 그 취지 등을 공표한 날부터 시·도 6개월, 시·군·구 3개월 이내
 - 서명방법** : 서면 또는 전자(주민e직접 플랫폼, juminegov.go.kr) 서명

전자서명 진행절차

1

PC 또는 모바일로 주민e직접 플랫폼 (juminegov.go.kr)에 접속

2

"서명하기" 클릭(click)

juminegov.go.kr

3

주민조례안 보러가기 클릭(click)

4

해당 지역에 청구된 주민조례안을 찾아 "조례안명"을 누른 후 주민조례안의 청구취지, 주요 내용을 확인

5

"온라인서명" 버튼을 눌러 대표자의 서명요청 메시지를 확인

6

온라인서명을 위해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한 후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을 통해 전자서명을 실시

CONTENTS

I	법무단신	5
II	이달의 새 법령	19
III	새로운 판례	23
IV	법령해석사례	37
V	행정심판 재결사례	45
VI	생활법률 상담사례	55
VII	외국어 생활법령정보	71
VIII	법나들이	95



법무단신



01

[판결] 추후 감정가로 증여세, 가격변동 세무서가 입증해야

과세당국이 부동산 증여세를 추가로 부과하기 위해 뒤늦게 감정평가를 했다면, 증여 시점부터 감정평가 시점까지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칠 만한 변화가 없었다는 점을 과세당국이 직접 입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5월 14일 A 씨 등 4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더위즈 서정호, 이갑성, 강송미, 변지혜 변호사)이 양천세무서장과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24두31963)에서 세무서 측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실관계]

원고 A 씨 등은 2019년 7월 29일 부모로부터 경기 성남시의 토지 456㎡와 지상 7층 규모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을 증여받았다. 이들은 같은 해 10월 부동산 가액을 약 39억5,188만 원으로 평가해 증여세를 신고·납부했다. 하지만 서울지방국세청은 2020년 4월 감정평가법인 2곳에 이 부동산의 감정평가를 의뢰했다.

두 감정평가법인은 부동산 가액을 각각 약 62억2,811만 원, 약 61억5,404만 원으로 평가했다. 감정평가의 가격산정 기준일은 증여일로부터 약 3개월 뒤인 2019년 10월 27일로 정했다. 피고 세무서장들은 두 감정가액의 평균인 약 61억9,108만 원을 부동산의 시가로 보고 증여세를 추가로 부과했다. A 씨 등은 해당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하급심 판단]

1심은 세무서장들이 부과한 처분을 모두 취소했다. 과세관청이 과세를 위해 일방적으로 의뢰해 받은 감정가액을 곧바로 증여 당시 시가로 볼 수 없다고 본 것이다.

항소심도 세무서장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도 세무서장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 증여일부터 가격산정 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주장·증명해야 한다.
- 원심(항소심)이 증여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까지의 기간만 놓고 위 요건을 판단한 것은 잘못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감정가액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볼 수 없어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02

[판결][단독] 후유장해보험금과 사망보험금 중복 지급 가능

사고로 후유장해 보험금을 지급받았더라도, 이후 후유증으로 사망했다면 사망보험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1단독 장병준 부장판사는 5월 14일 사망한 A 씨의 유족인 원고 B 씨(소송대리인 법률사무소 등불 윤인한 변호사)가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소송(2024가단 131073)에서 “삼성화재는 B 씨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삼성화재가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5월 30일 확정됐다.

[사실관계]

A 씨는 2021년 7월 삼성화재와 운전자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사고로 사망하면 1억 원을, 사고로 후유장해가 남으면 장해비율에 따라 300만 원~1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보험금을 받을 사람은 원고 B 씨로 지정돼 있었다.

A 씨는 2023년 11월 자택 화장실에서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A 씨는 수술을 받고 요양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다가 숨졌다.

삼성화재 측은 A 씨는 사고가 아니라 패혈증 등으로 사망했으므로 사망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A 씨에게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했으므로 사망보험금은 줄 수 없다고 했다.

[법원 판단]

법원은 삼성화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제1조에서는 상해후유장해 보험금의 지급사유를, 같은 약관 제3조에서는 사망보험금의 지급사유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

- 이 사건 보험계약은 동일한 보험사고에 대한 중복지급을 인정하는 별도의 규정이 명시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동일한 보험사고에 대해 사망보험금과 후유장해보험금을 별도로 지급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B 씨의 소송대리인]

원고 B 씨의 소송대리인 윤인한(변호사시험 6회) 법률사무소 등불 변호사는 “후유장해보험금이 전액 지급됐는데, 중복지급 약관 규정이 없음에도 담보구조와 보험료 체계가 독립적으로 설계돼 있다면 사망보험금의 중복지급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 사안”이라고 말했다.

03

[판결] “자차보험 자기부담금, 상대 보험사에 청구 가능”

자기차량손해보험(자차보험)에 가입한 교통사고 피해자가 보험 처리 과정에서 부담한 자기부담금 가운데 상대방 과실에 해당하는 금액은, 보험사 간 정산이 끝났더라도 피해자가 상대방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26년 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자기부담금에 대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을 인정한 데 이어, 이번에는 보험사가 해당 금액을 먼저 수령한 경우에도 그 권리가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5월 14일 A 씨가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23다228244)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사실관계]

A 씨는 2020년 1월 대전 도마동에서 운전하던 중 다른 차량과 부딪혔다. 이 사고로 A 씨 차량 일부가 파손됐다. A 씨 보험사는 차량 수리비 270만 원 중 자기부담금 50만 원을 뺀 220만 원을 A 씨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했다. 자기부담금 50만 원은 A 씨가 직접 부담했다. A 씨의 보험사는 상대방 차량 보험사인 현대해상에 전체 수리비 중 상대방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상(대신 지급한 돈을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것)했다. 상대방 차량 보험사인 현대해상은 A 씨 보험사에 108만 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A 씨는 “(내가) 실제 부담한 자기부담금은 보상받지 못했다”며 자기부담금(50만 원) 중 상대방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라며 현대해상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하급심 판단]

1심과 항소심은 A 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급심은 “A 씨가 자기부담금 약정이 포함된 자기차량손해보험계약을 체결했고, 사고 발생 후 자기부담금을 부담하게 된 것은 보험계약에 따른 결과로, 이를 다시 가해자 측 보험사에 청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 보험사가 피보험자에게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보험금을 먼저 지급한 경우, 상대방 보험사에 구상할 수 있는 범위는 ‘보험사가 실제 지급한 보험금 중 제3자의 책임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제한된다. 보험사가 지급하지 않은 자기부담금 부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그대로 남는다.
- 이 법리는 보험사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자기 부담금 중 상대방 책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미 받았더라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A 씨 차량 보험사는 A 씨에게 실제 지급한 보험금 중 상대방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보험자대위(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뒤 피해자의 권리를 넘겨 받아 가해자 측에 청구하는 것)를 할 수 있다. A 씨에게 지급하지 않은 자기부담금 부분까지 대위할 수는 없다. 따라서 A 씨 차량 보험사가 현대해상에 자기부담금 중 상대방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고, A 씨가 보험사에 이를 대신 받을 권한을 줬다고 볼 사정도 없다. A 씨는 여전히 현대해상을 상대로 자기부담금 가운데 상대방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04

[판결][단독] “구명조끼 없이 장난치다 익사… 업장 책임 25%”

웨이크보드를 타러 가 일행과 장난을 치던 이용객이 물에 빠져 숨진 사고와 관련해 업장 측에 25%의 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민사18단독 송효섭 부장판사는 5월 22일 사망한 A(27, 남) 씨의 부모가 웨이크보드 업체 측 총괄책임자와 사내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24가단62674)에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A 씨의 부모에게 약 1억7,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사실관계]

대구에 있는 한 헬스장에서 트레이너로 근무하던 A 씨는 2021년 7월 오전 10시경 동료들과 수상레저기구인 웨이크보드 등을 타러 갔다. 헬스장 대표와 일행들은 선착장 내 나무데크 가장자리에서 장난을 쳤고, A 씨는 헬스장의 대표에게 밀려 물에 빠져 익사로 사망했다.

앞서 피고들은 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피고들은 수상레저안전법상 시설이용자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하게 하거나, 착용하지 않은 이용자를 물가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한 점이 인정돼 업무상과실치사죄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법원 판단]

송 부장판사는 피고들의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망인의 과실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25%로 제한했다. 송 부장판사는 “A 씨가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물에 빠뜨리는 장난을 치다가 사고가 발생한 점, 물에 빠진 후에도 장난하는 것으로 오인되어 구조가 지연된 점, 수영금지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던 점, 성인으로서 주의의무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한다”고 밝혔다.

송 부장판사는 A 씨의 일실수입, 장례비 500만 원, 위자료를 산정했다. 망인의 위자료는 2,400만 원, A 씨의 부모 각각의 위자료는 500만 원을 인정했다.

05

[판결] “흥기 들고 돌아다녔다고 우범자로 처벌 안 돼”

흥기를 소지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폭력행위처벌법상 우범자죄로 처벌할 수 없고 검찰이 그 흥기를 범죄에 사용할 우려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5월 14일 폭처법 위반(우범자)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상고심(2026도4222)에서 원심의 유죄 판결을 깨고,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사실관계]

A 씨는 2024년 7월 B 씨로부터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은 다음 흥기를 들고 주변을 돌아다녔다. 검찰은 A 씨를 재판에 넘겼다. A 씨가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 범죄에 쓰일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다고 봤기 때문이다. A 씨는 준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후 2024년 5월 형 집행을 마쳤다. 사건 당시 형 집행 종료 뒤 3년 이내의 누범 기간 중이었다.

[하급심 판단]

1심은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가 누범 기간 중의 재범인 점, 지속적으로 재판에 불출석한 점 등을 고려한 판단이다.

항소심은 1심 재판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A 씨 사건을 다시 심리했지만, 형량은 징역 1년으로 유지했다.

[대법원 파기환송]

대법원은 파기환송했다.

- 폭처법 제7조에서 말하는 ‘이 법에 규정된 범죄’는 폭처법에 규정된 범죄만을 뜻한다. 위험한 물건의 ‘휴대’는 범죄 현장에서 사용할 의도로 위험한 물건을 몸 또는 몸 가까이에 지니는 것을 말한다.
- 공소사실에는 A 씨가 폭처법상 어떤 범죄에 사용할 의도로 흥기를 휴대했는지 기재돼 있지 않았다. A 씨가 흥기를 소지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폭처법상 어떤 범죄에 사용할 의도였는지에 관해서는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았다.
- A 씨가 B 씨에게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은 이후 흥기를 가지고 왔더라도, 흥기가 폭처법상 범죄에 쓰일 우려가 있었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
-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 씨의 우범자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흥기가 형법상 폭력 범죄에 쓰일 우려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형법상 폭력 범죄는 폭처법 제7조의 ‘이 법에 규정된 범죄’가 아니다. 그것만으로 폭처법 위반(우범자)죄로 처벌할 수 없다.

06

[판결] 부모 앞에서 상대방 욕설... “전파 가능성 없어 모욕죄 안 돼”

말다툼 중 상대방의 미성년 자녀에게 욕설을 했더라도, 이를 들은 사람이 피고인의 부모 등 소수에 그쳤다면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5월 20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2026도1033)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사실관계]

A 씨는 2023년 5월 충남 서산시에서 토지 경계 문제로 B 군의 아버지와 다투던 중 당시 15세였던 B 군에게 여러 차례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현장에는 B 군의 아버지와 A 씨의 부모가 있었다.

[하급심 판단]

1심은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도 “피고인의 부모는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불특정 다수에 해당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이 사건 욕설이 피고인의 부모를 통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벌금은 50만 원으로 낮췄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사건을 파기환송 했다.

-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이 사건 욕설을 했고, 이 사건 욕설을 들은 사람은 피해자의 부친과 피고인의 부모뿐이었다. 피고인의 부모가 이 사건 욕설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다거나, 이 사건 당시 근처에 마을 주민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신빙성 있는 증거는 없다.

- 개별적인 소수에 대한 발언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이유로 공연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막연히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에 대해 검사의 엄격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욕설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 피해자의 부친과 피고인 부모의 관계 등을 감안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오히려 당시의 여러 사정상 피고인의 부모 입장에서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다투던 중 불편한 감정을 거칠게 표현한 이 사건 욕설을 그대로 옮겨 주위에 전파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욕설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이달의 새 법령



지방정부 조례에 따른 해수욕장 불꽃놀이 일부 허용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 1. 시행)

여름철 해수욕장 이용객의 편의를 높이고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해수욕장 내 규제가 합리적으로 완화된다. 종전에는 해수욕장 전 구역에서 불꽃놀이 행위가 전면 금지되었으나, 앞으로는 각 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특정한 장소와 시간에 한정하여 장난감용 불꽃놀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했다.

성폭력 피해 학생 출석 인정 범위 확대 및 지원시설 종사자 결격사유 확인 절차 체계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7. 1. 시행)

성폭력 피해자의 평온한 일상 복귀를 돕고, 피해자 지원시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강화된다. 앞으로 피해 학생이 치료나 심리 상담 등으로 결석하는 경우, 그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여 학업 중단 부담 없이 피해 회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상담원 등 시설 종사자의 범죄경력조회 절차를 명확히 마련해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행정처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였다. 아울러 보호시설 입소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해자가 원할 경우 25세가 될 때까지 입소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해 체계적인 보호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보호시설 퇴소 시 피해자에게 지원되는 자립지원금 및 자립수당의 법적 근거도 한층 명확히 규정했다.

1인 및 여성 소상공인 사업장 범죄 예방 및 안전망 강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7. 1. 시행)

1인 소상공인 및 여성 소상공인을 범죄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적 지원 제도가 신설된다. 앞으로 1인 소상공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에 대하여 범죄 예방을 위한 현황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안전 보장 물품의 지급 및 사업장에 대한 비상벨·인공지능 침입 감지 장치 등 디지털 기반 안전설비의 설치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책임성 강화 및 소비자 구제 실효성 제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7. 21. 시행)

개인 간 거래(C2C) 확산 등 디지털 거래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거래질서의 투명성을 높인다. 개인 판매자와 소비자 간 분쟁 발생 시 분쟁조정기구, 법원 또는 소비자의 요청이 있으면 통신판매중개업자로 하여금 개인 판매자의 신원정보와 거래내역을 제공하여 분쟁의 해결에 협조하도록 하는 의무를 도입한다. 또한 사용후기 삭제 기준 및 이의제기 절차를 사전에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조사나 심의를 받는 사업자의 자발적인 시정방안이 적절하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심의절차를 중단하고 시정방안과 같은 취지의 의결을 하는 동의의 결제도를 도입하여 분쟁 시 신속한 피해구제를 유도한다.



새로운 판례



0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이 규정하는 ‘이미 장애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부위에 장애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6. 25. 선고 중요판결]

2026두30446 장해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차) 상고기각

장애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 그것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이 같은 범위 내에 속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둘 이상의 장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53조 제4항에서 말하는 ‘같은 부위’의 장애로 보아야 하는지 및 위 시행령 조항이 규정하는 ‘이미 장애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부위에 장애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의 의미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은 장애등급은 신체를 해부학적으로 구분한 부위(장해부위) 및 장해부위를 생리학적으로 장해군으로 구분한 부위(장해계열)별로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장해부위에 대하여 제1호 내지 제10호로 분류함에 있어, 그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제7호, 제9호 및 제10호와 같이 신체를 단순 부위로만 분류(이른바 국소해부학적 분류)한 것이 있는가 하면, 제5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 기능’과 제8호 ‘체간(척주와 그 밖의 체간골)’과 같이 구조 또는 기능상 서로 연관성이 있는 계통에 따라 분류(이른바 계통해부학적 분류)한 것도 있고, 같은 조 제3항 [별표 3]은 이러한 장해부위에 대하여 다시 기질장애와 기능장애로 나누어 모두 26개의 장해계열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은 반드시 의학적으로나 국소해부학적 또는 계통해부학적 측면에서 구분하는 부위 및 계열과 일치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따라서 장애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 그것이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이 같은 범위 내에 속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둘 이상의 장애는 시행령 제53조 제4항(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에서 말하는 ‘같은 부위’의 장애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0두 598 판결 참조).

이 사건 규정은 ‘이미 장애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부위에 장애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그 심해진 장애에 대한 장애급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이미 장애가 있는 부위에 업무상 재해로 그 정도가 더 심해진 경우 그 부분에 한하여 장애보상을 한다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두15640 판결 참조), 여기서 말하는 ‘심해진 경우’란 업무상 재해로 새롭게 장애가 더해진 결과 현존하는 장애가 기존의 장애보다 중하게 된 경우를 말하되, 장애등급의 기준상 기존의 장애등급보다도 현존하는 장애의 등급이 중하게 되지 않으면 ‘심해진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99두1687 판결 참조).

㉔ 원고는 과거 업무상 사고로 우측 손목관절의 기능장애(기존 장애)로 장애등급 제 12급(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판정을 받은 바 있는데, 이후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우측 전관절 극상건의 파열’의 업무상 재해를 입고 피고에게 장애급여를 청구함. 피고는 원고가 기존에 ‘우측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였는데, 신규로 우측 어깨 관절의 기능장애(신규 장애)를 입었고, 이는 장애등급 제12급(우측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바, 기존 장애와 신규 장애를 감안하여 원고에 대한 최종 장애등급을 ‘가중 제11급’으로 결정한 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이 사건 규정)을 적용하여 제11급 장애보상일시금 지급일수에서 기존 장애의 장애등급 제12급 장애보상일시금 지급일수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장애보상일시금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을 함. 이에 원고는 기존 장애와 신규 장애는 신체 부위와 장애의 내용이 다르고, 양자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규정을 적용하여 장애보상일시금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임

㉕ 원심은, 원고의 기존 장애와 신규 장애는 모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 46조 제2항 제9호에서 정한 같은 장애부위(우측 팔)와 같은 조 제3항 [별표 3]에서 정한 같은 장애계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규정이 정한 ‘같은 부위’에 해당하고, 원고의 장애등급이 기존 제12급에서 신규 장애로 인하여 제11급으로 가중

되었는바, 이 사건 규정에서 말하는 ‘이미 장애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부위에 장애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규정을 적용하여 원고에 대한 장애보상일시금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고, 원고의 최종 장애등급이 제11급으로 결정됨에 있어 기존 장애가 고려되었으므로, 원고의 기존 장애와 신규 장애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는 ‘이미 장애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부위에 장애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02

교사의 훈계나 지적이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6. 25. 선고 중요판결]

2024도6945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바) 파기환송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에 규정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의 의미 및 그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아동복지법은 제1조에서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입법목적을 밝히면서 제2조 제3항에서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그 기본이념을 밝히고 있다. 한편 제3조 제7호에서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7조 제5호에서는 ‘누구든지 아동에게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와 유기 및 방임행위를 동일한 범정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 아동복지법의 입법체계 등을 종합할 때,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아동이 사물을 느끼고 생각하여 판단하는 마음의 자세나 태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성장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이에 대하여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행위’를 의미한다(헌법재판소 2015. 10. 21. 선고 2014헌바266 결정 참조).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행위 당시 행위자가 피해아동에게 보인 태도, 피해아동의 연령, 성별, 성향, 정신적 발달상태 및 건강상태, 행위에 대한 피해아동의 반응 및 행위를 전후로 한 피해아동의 상태 변화, 행위가 발

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의 정도와 태양,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행위가 피해아동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7도5769 판결, 대법원 2025. 7. 3. 선고 2024도9609 판결 등 참조).

☞ 초등학교 교사인 피고인이 체육 수행평가를 실시하던 중 피해아동으로부터 평가 항목 중 일부를 하지 못하였다는 항의를 받았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피해아동이 이어진 수업시간까지 계속하여 큰 소리로 항의하면서 피고인에게 대드는 상황이 발생하였음. 이에 피고인이, ① 피해아동을 교실 뒤로 나가게 함과 아울러 반성문을 작성하도록 하면서 피해아동에게 “너 왜 거짓말 해. 사기꾼. 너희들은 재처럼 거짓말하는 애가 되지 마라. 꼴 보기 싫어.”, “인생 그렇게 살지 마라.”고 말함과 아울러, 같은 날 부모들이 확인하는 알림장 어플리케이션에 피해아동을 지칭하여 “거짓말을 그럴듯하게 꾸며서 자세히 울면서 억울하다면서 천연덕스럽게 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봤다고 하는데도 끝까지 우기고 울면서 억울하다고 거짓말을 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고, ② 그 다음날 피해아동의 부친이 전날 있는 일에 관하여 면담을 위해 학교로 찾아오겠다는 연락을 받고서 피해아동을 학교 연구실로 데려가 “너희 부모는 너 유치원 다닐 때도 난리였지? 아니 난리를 쳤겠지.”라고 말하였다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따른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으로 기소된 사안임

☞ 원심은, 위 수업시간 발언과 알림장 게시행위 및 위 학교 연구실에서의 발언은 모두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아동에게 위와 같은 발언을 하게 된 경위와 당시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피해아동의 행위는 교실에 있던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과 담임교사인 피고인의 교권을 침해하는 수업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피고인은 담임교사로서 피해아동에 대한 지도행위에 관하여 일정한 재량권을 가지는데 위와 같은 발언이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했다고 보이지 않으며, 피고인의 발언이 다소 부적절하다고 볼 수는 있으나, 이는 교육적 조치 과정 중 피해아동의 거짓말이 심각한 잘못이라는 점을 강조하다가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피해아동을 따끔한 지적으로 진정시키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

며, 피고인이 당시 피해아동에 대하여 달리 폭언하거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음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발언이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거나, 그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03

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사업주 중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로서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에 해당하는지 등이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6. 25. 선고 중요판결]

2024도5902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아) 파기환송(일부)

1. 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사업주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의 형사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자의 범위, 2.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 도급과 관련한 안전·보건조치의무 및 그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규정을 해석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및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사망한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의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도급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은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와 관련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 공사 전부를 도급 주는 사업주 중 그 사업주의 근로자와 수급인의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도급 사업주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고(제29조 제1항), 그 위반행위를 벌금형으로 처벌하되(제70조), 추락, 토사 붕괴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도급 사업주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제29조 제3항, 제68조 제3호). 반면 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2020. 1. 16.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이하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라고 한다)은 “도급”의 의미를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제2조 제6호).”라고 정의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도급인에 해당하는 사업주로 하여금 도급인의 사업장(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를 포함한다)

에서 작업을 하는 자신의 근로자뿐만 아니라 관계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하여서도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함으로써(제63조), 자신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관계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하는 도급인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였다. 또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기존의 규정을 유지하면서 그 범정형을 상향하는 한편(제169조 제1호), 의무 위반의 결과 관계 수급인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수급 사업주와 마찬가지로 형사처벌하고, 사망사고가 반복될 경우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여(제167조) 도급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였다.

한편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인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건설공사발주자’라는 개념을 도입하면서(제2조 제7호 단서), “건설공사발주자란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라고 정의하는 한편(제2조 제10호), 건설공사발주자에 대하여 별도의 조항에서 산업재해 예방 조치의무를 부과하고(제67조) 그 위반행위를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정하였다(제175조 제4항 제3호). 이에 따르면 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관계 수급인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사업주 중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는 도급인에 해당하여 그 근로자의 사망에 관하여 개정법 제167조의 형사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그렇지 않은 자는 건설공사발주자로서 위와 같은 형사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따라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 도급과 관련한 안전·보건조치의무 및 그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규정의 해석에서는 위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 체계나 입법 경위를 고려하여야 한다. 아울러 개정법상 도급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는 수급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와 중첩적으로 부과되는 것으로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제167조에서 관계 수급인 근로자 사망에 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한 것은, 종래 도급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를 한정적으로만 인정하고 그 의무 위반에 대하여도 제한적으로 형사처벌하던 것에 비하여, 의무 인정 범위를 확대함과 함께 그 위반의 결과인 사망사고에 대한 도급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여 도급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적 결단이라는 점, 다만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건설공사의 경우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도급인의 범위를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에 한정할 점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사망한 관계 수급인의 근로자와 관련하여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의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도급인에 해당하는지는, 위와 같은 사항과 함께 도급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유해·위험요소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도급 사업주가 해당 건설공사에 대하여 행사한 실질적 영향력의 정도, 도급 사업주의 해당 공사에 대한 전문성, 시공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범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도14674 판결 참조).

다른 한편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건설공사의 경우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도급인의 범위를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에 한정하고 있고, 건설공사발주자도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 진흥법」 등의 관련 법령 및 수급인과의 도급계약에 따른 일정한 의무 등을 부담하고 있다. 그런데 건설공사발주자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으로서의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우려한 나머지 수급인의 건설공사에 대한 관여를 주저하거나 포기함으로써 오히려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성을 가중시키는 결과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산업재해의 예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건설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자격증이나 관련 전문인력과 설비 등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고, 공사계약상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유해·위험 요소에 대한 관리 권한이나 의무가 부여되지 아니한 지위에 있는 도급 사업주가 건설공사 과정에서 도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점검, 조정 및 확인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였다고 보아 쉽사리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의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도급인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 피고인 1은 ○○화력발전소 건설공사를 진행하는 법인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2(피고인 1 ○○건설본부의 본부장으로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겸 안전보건관리 총괄책임자), 7, 8은 피고인 1의 직원들이며, 피고인 3은 발전소 공사 중 이 사건 배연탈황설비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회사이고, 피고인 4는 이 사건 배연탈황설비 공사 현장소장이며, 피고인 5는 이 사건 전기제어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회사이고, 피고인 6은 이 사건 전기제어 공사 현장소장임

- ☞ 피고인들은 산업재해 예방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기소됨(구체적으로는, 피고인 1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2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 7, 8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각 기소됨.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생략)
- ☞ 원심은, 피고인 1이 이 사건 배연탈황설비 공사를 포함하여 이 사건 발전소 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도급인에 해당하므로,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으로서의 안전조치의무를 부담한다는 이유 등에서 피고인 1 및 피고인 1의 직원들인 2, 7, 8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음
-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전력자원의 개발 및 판매를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는 피고인 1이 이 사건 배연탈황설비 공사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산업재해의 예방과 관련된 유해·위험요소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배연탈황설비 공사에 관한 높은 전문성을 지닌 도급 사업주로서 수급인에게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1을 이 사건 배연탈황설비 공사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으로 보기 어렵고, 사정이 그러한 이상, 피고인 1의 ○○건설본부장으로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겸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인 피고인 2에게 피고인 1이 이 사건 배연탈황설비 공사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산업재해 예방 조치의무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 7, 8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및 업무상 과실치상 부분 또한 피고인 1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에 이르지 않는 건설공사발주자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피고인 7, 8에게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업무상 주의의무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인정되는 업무상 주의의무의 내용 등을 다시 심리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이유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2, 7, 8 부분을 파기·환송함

04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대항력을 갖춘 상가건물 임차인이 종전 임대인과 한 차임 면제 약정으로 상가건물을 양수한 새로운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요건이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6. 25. 선고 중요판결]

2026다201494 임료 (다) 파기환송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대항력의 요건으로 '사업자등록'을 규정한 취지 및 사업자등록이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약정을 통해 차임이 면제되는 등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내용이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통해 그 변경 사항이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서에 기재되는 등으로 공시되지 않는 이상 임차인은 그 변경으로써 상가건물을 양수한 새로운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에서 건물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등록'은 거래 안전을 위하여 임대차의 존재와 내용을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서 마련된 것이므로, 사업자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지는 일반 사회통념상 그 사업자등록을 통하여 해당 건물에 관한 임대차의 존재와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6. 6. 9. 선고 2013다215676 판결 등 참조).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제2항, 제12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4. 2. 29. 대통령령 제34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3항, 제14조 제1항 제7호(위 규정들은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 사업자등록에도 준용된다)에 따르면, 사업장을 임차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할 때 세무서장에게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한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보증금·임차료 또는 임대차기간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상가임대차법 제4조 제3항, 상가

임대차법 시행령 제3조의3 제2항, 제3항, 구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2022. 2. 7. 법무부령 제1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상가건물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상가건물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여 위 정보가 기재된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서’를 열람하거나 교부받을 수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약정을 통해 차임이 면제되는 등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내용이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통해 그 변경 사항이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서에 기재되는 등으로 공시되지 않는 이상 임차인은 그 변경으로써 상가건물을 양수한 새로운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 ☞ 피고는 2013. 4. 10.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던 갑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를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4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한 후 이 사건 건물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마쳤음. 그 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년 단위로 갱신(임대차 목적물이 일부 변경되고 임대차보증금이 1억 원으로 증액됨)되어 오던 중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2020. 9. 29. 그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 지급을 청구한 사안임
- ☞ 원심은, 2013. 8. 21.과 2018. 1. 15. 두 차례 작성된 갑 명의의 각서 내용 등을 기초로 갑과 피고 사이의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내용이 ‘차임을 면제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고 인정한 다음,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양수하여 갑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원고에 대하여도 그 차임 면제로써 대항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음
-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실시하면서, 2013. 8. 21. 자 각서는 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서로 다른 계약에서 발생한 ‘갑의 피고에 대한 차임 채권’과 ‘피고의 갑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을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시키기로 하는 약정에 불과하여, 그로 인해 이 사건 임대차계약 내용 자체가 변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설령 갑의 각서 교부 등을 통해 차임을 면제하는 것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내용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통해 그 변경 사항이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서에 기재되는 등으로 공시되지 아니한 이상 피고가 그 차임 면제로
써 이 사건 건물 양수인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
심을 파기·환송함



법령해석 사례



1 사례

행정안전부 - 민방위대에서 제외되는 ‘재학하는 학생’에 휴학 중인 학생도 포함되는지?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등 관련)

1. 질의요지

「민방위기본법」 제18조제1항제18호가목에서는 민방위대를 조직할 때 제외되는 자로 ‘학생’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18조제1항제18호가목에 따라 민방위대에서 제외되는 학생을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제1호) 등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민방위기본법」 제18조제1항제18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라 민방위대에서 제외되는 ‘재학하는 학생’에 휴학 중인 학생도 포함되는지?

2. 회답

「민방위기본법」 제18조제1항제18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라 민방위대에서 제외되는 ‘재학하는 학생’에 휴학 중인 학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이유

먼저 민방위 대원은 「민방위기본법」에 따라 교육·훈련(제23조), 동원(제26조)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바, 같은 법 제18조제1항제18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서 ‘재학하는 학생’을 민방위대에서 제외한 것은 학업을 수행하고 있는 학생에 대하여 민방위대 편성에 따른 의무 부담을 배제하기 위한 취지로 보이고,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재학하는 학생’은 단순히 학적을 보유한 자가 아니라 실제로 학업을 수행하고 있는 학생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반면, ‘휴학’은 일반적으로 질병이나 기타 사정으로 학교에 적을 둔 채 일정 기간 학교를 쉬는 것(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을 말하는바, 휴학 중인 경우 해당 학생의 실질적인 학업 수행은 일시적으로 중단된 상태이므로, 이를 고려할 때 휴학 중인 학생은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라 민방위대에서 제외되는 ‘재학하는 학생’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법령에서 일정한 원칙에 관한 규정을 둔 후 이러한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는 경우 그 예외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하여 해석해서는 아니 되고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데(각주: 법제처 2012. 11. 3. 회신 12-0596 해석례 참조), 「민방위기본법」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국가적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민방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민방위대의 조직·동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법률(제1조)로서, 같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서 민방위대는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 조직한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 및 각 호에서는 그에 대한 예외로서 민방위대에서 제외되는 자들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예외 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외 대상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재학하는 학생’은 문언 그대로 휴학 중인 학생을 포함하여 학적을 보유한 학생 전체를 의미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문언뿐 아니라 민방위대의 조직 및 동원 등을 통해 비상사태나 국가적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민방위기본법」의 목적과 같은 법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서 민방위대에서 제외되는 학생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규정한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민방위기본법」 제18조제1항제18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라 민방위대에서 제외되는 ‘재학하는 학생’에 휴학 중인 학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사례

민원인 -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고 2년 이상 3년 미만의 기간 동안 부동산업무에 종사한 후 부동산 관련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자의 경우,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부동산개발 실무란 제2호의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1. 질의요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개발업법”이라 함) 제5조제1항에서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및 별표 1 부동산개발 실무란 제2호에서는 ‘법무사, 세무사 또는 공인중개사 자격이나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이후 부동산개발에 관한 사업실적 또는 매출액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인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개인사무소,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자산관리회사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회사·기관에서 부동산의 취득·처분·관리·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이하 “부동산업무”라 함)에 3년(부동산 관련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2년) 이상 종사한 자’를 규정하고 있는바,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고 2년 이상 3년 미만의 기간 동안 부동산업무에 종사한 후 부동산 관련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자의 경우(각주: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 학위는 취득하지 않았고, 부동산 관련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이후 부동산업무 종사경력 없음, 경력 기간 외의 부동산개발업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요건은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전제함), 부동산개발업법 시행령 별표 1 부동산개발 실무란 제2호의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부동산개발업법 시행령 별표 1 부동산개발 실무란 제2호의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3. 이유

먼저 부동산개발업법 시행령 별표 1 부동산개발 실무란 제2호에서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에 대하여 법무사, 세무사 또는 공인중개사 자격이나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이후” 부동산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를 규정하면서 “3년” 뒤에 괄호를 두어 “부동산 관련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2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학사 이상 학위에는 석사 이상 학위가 포함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문언상 해당 규정은 부동산 관련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경우 경력 기간의 예외를 정한 것으로서,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경우 요구되는 최소 경력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여주려는 취지의 규정인바, 부동산 관련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도 그 취득 “이후” 부동산업무 종사경력을 2년 이상 갖추어야 한다는 의미로 보는 것이 문언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법령에서 일정한 원칙에 관한 규정을 둔 후 이러한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는 경우 그 예외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하여 해석해서는 안 되고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데(각주: 법제처 2012. 11. 3. 회신, 12-0596 해석례 참조), 부동산개발업법 시행령 별표 1 부동산개발 실무란 제2호에서 “부동산 관련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2년”이라고 규정한 것은 경력 기간에 대한 예외일 뿐 경력 산정시점에 대한 예외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예외규정을 근거로 부동산 관련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경우 갖추어야 하는 2년 이상의 부동산업무 종사경력에 그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하기 전에 종사한 경력까지 포함된다고 확대하여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은 국민의 재산권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부동산개발이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시행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전문인력인데, 부동산개발업법 시행령 별표 1 부동산개발 실무란 제2호에서 ‘법무사, 세무사 또는 공인중개사 자격이나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자’에게 요구되는 부동산업무 종사경력 3년과 ‘부동산 관련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자’에게 요구되는 부동산업무 종사경력 2년을 동등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은 취득한 자격 및 학위의 종류에 따라 요구되는 경력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부동산 관련 분야에 대한 보다 높은 지식 및 전문성을 갖춘 이후에 쌓은 부동산업무 종사경력을 그 전의 부동산업무 종사경력과 구분하고 부

동산 관련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이후의 경력만을 인정함으로써 부동산개발 관련 업무를 책임 있게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각주: 법제처 2020. 5. 11. 회신, 20-0060 해석례 참조).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부동산개발업법 시행령 별표 1 부동산개발 실무란 제2호의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3 사례

민원인 - 승강기 자체점검 결과 입력기간인 ‘10일’을 산정할 때 토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하여야 하는지?〔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 29조제3항 등 관련)

1. 질의요지

「승강기 안전관리법」(이하 “승강기법”이라 함) 제31조제1항에서는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자체점검(이하 “자체점검”이라 함) 월 1회 이상 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자체점검 실시일부터 10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승강기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 따른 ‘10일’의 입력기간을 산정할 때 토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2. 회답

승강기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 따른 ‘10일’의 입력기간을 산정할 때 토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3. 이유

먼저 승강기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서는 같은 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자체점검 실시일부터 10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10일’의 입력기간을 산정할 때 토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기본법」 제6조제1항에서는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같은 법 또는 다른 법령등(각주: 「행정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법령등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55조에서는 기간의 계산에 대해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서 다르게 정한 바가 없으면 같은 법 제1편제6장의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행정기본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민법」을 준용하여 그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않고 말일이 종료함으로써 기간이 만료하며,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익일로 기간이 만료한다는 「민법」 제157조 전단, 제159조 및 제161조에 따라야 하고, 같은 법에서는 그 기간 중 토요일 및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안의 경우 10일의 입력기간을 산정할 때 토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하여 기간을 산정(각주: 법제처 2020. 10. 6. 회신 20-0402 해석례, 법제처 2020. 12. 30. 회신 20-0642 해석례, 법제처 2021. 4. 9. 회신 21-0074 해석례 및 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2도13215 판결례 참조)해야 합니다.

아울러 행정에 관한 기간 계산의 법리를 반영하여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에서 “자체점검 실시결과와 보고기간에는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다수의 입법례(각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3항,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후단,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1조제2항제3호 등 참조)에서 기간 산정 시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명시하여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 따르면 민원의 처리기간을 6일 이상으로 정한 경우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도 같은 법을 유추 적용하여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하고 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법규범을 유추 적용하기 위해서는 법적 규율이 없는 사안과 법적 규율이 있는 사안 사이에 공통점 또는 유사성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법규범의 체계, 입법의도와 목적 등에 비추어 유추 적용이 정당하다고 평가되는 경우여야 하는데(각주: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다226135 판결례 참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상의 민원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처분 등 특정 행위를 요구하는 것’(제2조제1호)으로서, 이러한 민원의 처리기간은 승강기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자체점검 결과를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해야 하는 기간과는 규율 대상·목적·성격 등이 서로 달라 유추 적용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승강기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 따른 ‘10일’의 입력기간을 산정할 때 토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행정심판 재결사례





채권압류처분 등 무효확인청구

재결요지

사 건 명 채권압류처분 등 무효확인청구

사건번호 2025-16260

재결일자 2026-01-13

재결결과 기각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3. 8. 24. 청구인에게 한 압류 및 채권추심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근로복지공단)은 2021. 11. 15. 청구인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휴업급여 지급기간 총 29일 중 26일간 취업하여 보험급여를 부정수급하였다’는 이유로 휴업급여 부당이득금 173만 6,800원의 2배인 347만 3,600원의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위 부당이득 징수금을 미납하자, 2022. 2. 15.부터 2023. 5. 2.까지 4회에 걸쳐 청구인에게 납부독촉을 한 후, 2023. 8. 23. 청구인에게 같은 날 청구인의 금융기관(카카오뱅크, 대구은행)에 대하여 채권압류하였음을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휴업급여를 신청할 당시 ‘취업안됨’란에 서명되어 있었다고 하지만 그 사실을 알았다면 휴업급여 기간 중에 취업하지 않았을 것이고, 발가락 골절 수술비로 200만원 정도와 돈이 없었기에 집सन 상태로 일한 것 뿐으로 부당하게 이득을 편취하지 않았음에도 휴업급여로 받은 금액의 2배를 징수금으로 정한 이 사건 처분 1·2는 너무 과하여 부당하다.

3.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국세징수법 제31조, 제51조, 제52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휴업급여 청구서, 기획 합동조사 조사결과 알림 문서, 체납처분표, 이 사건 처분서 1·2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0. 4. 9. 근로복지공단(A지사)에 청구기간은 ‘2019. 11. 2.부터 2019. 12. 2.까지’로, 확인사항에는 ‘청구기간 중 취업한 사실이 있습니까? [V] 취업하지 못함’으로 각각 기재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휴업급여를 청구하였고, 근로복지공단(A지사)은 2020. 4. 10. 청구인에게 193만 7,200원을 지급하였다.

나. 근로복지공단(B본부)은 2021. 10. 20. 근로복지공단(A지사)에 다음과 같이 ‘기획 합동조사 조사결과 알림’ 제목의 문서를 시행하였다.

- 다 음 -

〈기획 합동조사 조사결과 알림(부정적발)〉

○ 귀 지사에서 휴업급여 지급한 청구인 등 2명의 휴업급여에 대하여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와 부정수급 기획 합동조사 결과, 청구인 등 2명은 요양기간 중 취업하였음에도 휴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사실이 확인되어 붙임과 같이 조사자료를 송부 하오니 부당이득 징수결정(배액) 등 필요한 조치 후 그 결과를 회신하여 주기 바람
붙임 1. 조사결과 엑셀파일 1부.

2. 기획 합동조사 조사결과 보고 1부. 끝.

〈부당이득금내역 취합(2021년 합동조차 2차)〉

성명	휴업급여 내역			부당이득 세부내역	
	일수	지급기간	지급일	일수	부당일자 (라이더 운행일 대사결과)
청구인	29	2019.11.4.~2019.12.2.	2020.4.10.	26	11월:4~24, 28,29,30 12월:1,2

다. 근로복지공단(A지사)은 2021. 11. 3. 청구인에게 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안내 포함)를 한 후 2021. 11. 15.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 1을 하였다.

- 다 음 -

〈부당이득(휴업급여) 징수결정 및 납부안내〉

- 관련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휴업급여), 제84조(부당이득의 징수)
- 재활보상부-5237(2021. 11. 3.), ‘부당이득(휴업급여) 징수결정처분 사전통지서(의견제출안내)’
- 청구인은 2019. 11. 2. 발생한 재해로 요양 중 2019. 11. 2. ~ 2019. 12. 7.(29일) 기간의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 지급기간 중 26일의 기간동안 취업한 사실이 확인됨
- 이러한 위반행위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휴업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아래와 같이 지급한 휴업급여의 배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결정함

급여종류	세부내역	지급한 금액	부당이득 금액	부당이득 징수액	비고
휴업급여	2019.11.2.~2019.12.7. 총29일 중 26일 해당	1,937,200원	1,736,800원	3,473,600원	배액 징수

라. 피청구인 제출 체납처분표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4차례 이 사건 처분 1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금 독촉고지와 2차례 채권압류 예고통지를 하였다.

- 다 음 -

발송일	처리내용	비고
2022. 2. 15.	부당이득 납입고지 등기발송	반송-폐문부재
2022. 3. 29.	부당이득 납입고지 등기발송	
2022. 11. 8	부당이득 납입고지 등기발송	반송-보관기간경과
2023. 5. 2	부당이득 납입고지 등기발송	
2023. 5. 11.	압류예고통지 등기발송	
2023. 7. 4	압류예고통지 등기발송	

마. 피청구인은 2023. 8. 23.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 2를 하였다.

- 다 음 -

- 채권자(채납자) : 청구인
- 채무자(제3채무자) : 카카오뱅크, 대구은행
- 압류 연월일 : 2023. 8. 23.
- 압류 금액 : 3,473,600원

위와 같이 채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압류하였음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국세징수법」 제41조제1항 등에 의하여 통지함

5. 이 사건 처분의 무효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제1호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2항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제17조제1항 및 제19조제2항에 따른 보험료는 제외한다) 또는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의무자에게 그 금액과 납부기한을 문서로 알려야 하며(제1항), 건강보험공단은 보험가입자가 보험료 또는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그 납부의무자에게 징수금을 낼 것을 독촉하여야 하고(제2항),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제2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까지 보험료나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 3) 「국세징수법」 제31조, 제51조 및 제52조를 종합하면,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독촉을 받고 독촉장에서 정한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고, 채권을 압류하려는 경우에는 그 뜻을 제3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채권을 압류한 경우 그 사실을 채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채권 압류의 효력은 채권 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나.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들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취지로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서울지방경찰청과 근로복지공단의 합동조사 결과, 청구인이 휴업급여를 받던 기간인 2019. 11. 4.부터 2019. 12. 2.까지 총 29일 중 26일간 취업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청구인도 이러한 휴업급여 지급기간 중에 취업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청구인의 이러한 위반행위는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84조에 따라 부정수급한 보험급여액의 2배의 징수금 부과 사유가 인정되는 점, ③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등 참조), 청구인에게는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④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부과한 부당이득 징수금의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징수금 납부를 독촉하였으나 청구인은 체납된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는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납부하지 않은 징수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채권에 대하여 압류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들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들이 당연 무효라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명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25-18708

재결일자 2026-01-13

재결결과 기각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5. 11. 19. 청구인에게 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A 국적의 청구인(2002년생, 남)은 2021. 4. 15. 어학연수(D-4) 체류자격으로 국내 입 국하였고, 2022. 7. 7. 전문학사(D-2)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체류하다가 체류기 간 만료일인 2025. 9. 30. 피청구인(○○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에게 체류기 간 연장허가 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체류기간 3년 상한 도래’를 이유로 2025. 11. 19. 청구인 에게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대학교 A학과에 2학년으로 재학 중인데, 최초에 B학과에 진학했다가 적성에 맞지 않아 전과하였고, 갑상선 기능항진증을 앓고 있어 치료를 받는 기간과 요 양 으로 부득이 3년 내 졸업하지 못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 당하다.

3. 관계법령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0조의2, 제17조, 제25조, 제92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96조, 별표 1의2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18조의3, 제31조의2,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외국인기록표, 통합 신청서, 이 사건 처분서, 외국인 체류 안내매뉴얼 등 각 사본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가. 청구인은 2021. 4. 15. 최초 입국하여 어학연수(D-4) 체류자격으로 체류하면서 한 국어 연수를 받은 후 2022. 7. 7. ○○대학교 입학 을 사유로 전문학사(D-2) 체류자격으 로 변경허가를 받았고, ○○대학교총장이 발급한 2025. 9. 8.자 재학증명서에는 성명, 학 년, 학과 항목에 ‘청구인’, ‘2학년’, ‘A학과’로 각각 기재 되어 있다.
- 나. 청구인은 체류기간 만료일인 2025. 9. 30. 피청구인에게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 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2. 9. 1. 입학하여 초과 학기 연장까지 전문학사 자격의 총 체류기간 상한인 입학 후 최대 3년 상한 도래’를 이유로 2025. 11. 1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법무부 운영의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 게시된 ‘외국인 체류 안내매뉴얼’(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에는 유학(D-2) 체류자격 연장허가에 관하여 다음과 같 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체류기간 연장허가	가. 기본원칙 ○ 학사일정을 고려한 체류기간 부여 ○ 가사, 졸업연기 등을 위한 휴학 불인정 - 개인적인 사정 및 학점미달 등의 사유로 학업 중단(휴학)자는 체류기간 연장 제한 유학활동 종료자 등 체류기간 연장 특례 상한 - (전문학사) 입학 후 최대 3년(단, 3년제 전문학사 경우 최대 4년)
-----------	---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 1)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0조의2 및 제17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외국인은 일반체류자격 또는 영주자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하고,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으며, 일반체류자격 중 장기체류자격의 종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체류자격에 따른 활동범위는 체류목적, 취업활동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1의2의 5. 유학(D-2)에 따르면, 유학(D-2)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및 활동범위는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에서 정규 과정의 교육을 받거나 특정 연구를 하려는 사람으로 정하고 있다.

- 2) 「출입국관리법」 제25조제1항·제2항에 따르면,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하고, 체류기간 연장허가의 심사기준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6호에 따르면,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사증 등의 발급을 승인하거나 제9조의 위임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이 사증을 발급하는 경우 사증발급을 신청한 외국인이 ‘그 밖에 영 별표 1의2의 체류자격별로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심사·확인하여야 하고, 같은 시행규칙 제18조의3 및 별표 1에 따르면, 법 제1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체류자격의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은 별표 1과 같은데, 다만, 법무부장관은 국제관례나 상호주의 원칙 또는 국가이익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별표 1에서 정한 유학(D-2) 체류자격의 체류기간 상한은 2년 이고, 같은 시행규칙 제31조의2제3호에 따르면,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25조, 제25조의2 또는 제25조의5에 따른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하려면 외국인이 제9조의2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해야 한다.

- 3) 「출입국관리법」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르면, 법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등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권한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국·외국인청의 장,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장, 출입국·외국인청 및 출입국·외국인사무소 각 출장소의 장, 외국인 보호소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나. 판단

- 1) 외국인은 최초 입국 당시 인정받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만 체류할 수 있고, 외국인이 국내에 계속 체류할 필요가 있다면 출국 후 재입국이라는 절차를 거 쳐야 하며, 다만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엄격한 심사를 거쳐 체류자격 변경허가나 체류 기간 연장허가를 받아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이러한 체류자격 변경허가는 신청인 에게 당초의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지므로, 허가권자는 신청인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였더라도, 신청인의 적격성, 체류 목적, 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48846 판 결 참조).
- 2) 청구인은 3년 내 졸업하지 못한 개인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는 유학(D-2) 체류자격의 체류기간 상한은 2년으로, 이 사건 지침에는 2년제 전문학사 경우 입학 후 최대 3년으로 각각 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① 청구인은 2022. 9. 1. 2년제 전문학사 과정인 OO대학교에 입학하여 체류기간 만료일인 2025. 9. 30.까지 유학(D-2) 체류자격으로 체류기간 상한인 3년 기간을 이미 체류하였으므로, 3년 초과인 체류기간 연장허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② 국내 거 주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만 체류가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체류기간 만료 이후에도 국내에 계속 체류할 필요가 있다면 출국 후 재입국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함이 원칙인 점, ③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은 주 권 국가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것으로서 엄격히 관리되어야 하고, 이를 통해 확보하려는 국가의 안전과 질서유지라는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이 입게 될 개인적인 불이익에 비해 작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사실관계를 오인하였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생활법률 상담사례



01

지난달 평소보다 전기를 조금 더 사용하기는 했지만, 고지서를 보니 전기 요금이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사용량에 비해 전기요금이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가 있나요?

전기요금은 단순히 사용량에 단가를 곱하는 방식이 아니라 여러 항목이 합산되어 결정되며, 특히 주택용 전기요금은 누진제가 적용되어 사용량이 조금만 늘어도 요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 전기사용 용도에 따른 구분

계약종별은 전기사용계약단위의 전기사용 용도에 따라 주택용전력, 일반용전력, 교육용전력, 산업용전력, 농사용전력, 가로등, 예비전력, 임시전력으로 구분합니다[「기본공급약관」(한국전력, 2026. 4. 1. 시행) 제55조].

주택용전력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고객에게 적용합니다(「기본공급약관」 제56조제1항).

1. 주거용 고객(다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3조에 따라 인증된 지열·공기열 설비는 별도로 분리하여 일반용전력을 적용할 수 있음)
2. 계약전력 3kW이하의 고객(다만, 농사용전력, 가로등, 임시전력은 해당 계약종별을 적용함)
3. 독신자합숙소(기숙사 포함)나 집단주거용 사회복지시설로서 고객이 주택용전력의 적용을 희망할 경우
4. 주거용 오피스텔 고객(이 경우 주거용 오피스텔이란 주택은 아니면서 실제 주거 용도로 이용되는 오피스텔을 말함)

● 전기요금 계산

전기요금은 하나의 전기사용계약에 따라 1개월마다 계산하며,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및 연료비조정요금의 합계액으로 합니다(「기본공급약관」 제67조제

1항 및 제2항 참조).

특히, 주택용전력(저압, 표준전압 100V 이상 380V 이하)의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은 다음의 요율에 따라 계산하며, 400kWh(하계의 경우 450kWh)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누진제가 적용되어 전기요금이 급격하게 증가합니다(「기본공급약관」 제67조 제2항제1호 및 별표 1 참조).

기본요금(호당)		전력량요금(kWh당)	
200kWh 이하 사용	910원	처음 200kWh까지	120.0원
하계: 300kWh 이하 사용		하계: 처음 300kWh까지	
201 ~ 400kWh 사용	1,600원	다음 200kWh까지	214.6원
하계: 301~450kWh 사용		하계: 다음 150kWh까지	
400kWh 초과 사용	7,300원	400kWh 초과	307.3원
하계: 450kWh 초과 사용		하계: 450kWh 초과	

※ 하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기후환경요금과 연료비조정요금은 사용전력량에 대해 각각 기후환경요금 단가와 연료비조정단가를 곱하여 계산합니다(「기본공급약관」 제67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 그 밖에 전기요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전력공사 사이버지점 홈페이지(<https://online.kepco.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02

에어컨을 10년 넘게 썼더니 소음도 크고 전기료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번 기회에 전기요금도 적게 나오고 에너지 절약 효과가 큰 제품으로 바꾸고 싶은데,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보면 될까요?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이 높을수록(1등급에 가까울수록) 에너지 효율이 우수하여 에너지 절약과 함께 전기요금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전제품을 구입할 때는 제품 외관에 표시된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을 확인하여 효율등급이 높은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제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효율관리기자재에 대해 에너지의 소비효율 또는 사용량 표시, 등급기준 및 등급표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참조).

※ “효율관리기자재”란 보급량이 많고 그 사용량에 있어서 상당량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기자재 중 에너지이용합리화에 필요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지정한 에너지사용기자재로서 전기냉장고, 전기냉방기, 전기세탁기, 조명기기, 삼상유도전동기, 자동차 등을 말합니다(「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및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6호-26호) 제3조제1호 참조).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은 소비효율등급 부여 기준에 따라 최상위 1등급부터 5등급까지 구분됩니다(「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제3조제5호 참조).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이 1등급에 가까울수록 에너지절약형 제품이며, 1등급의 제품을 사용하면 5등급 제품 대비 약 30~40%의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한국에너지공단 효율관리제도 홈페이지(<https://eep.energy.or.kr>) 참조).

●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 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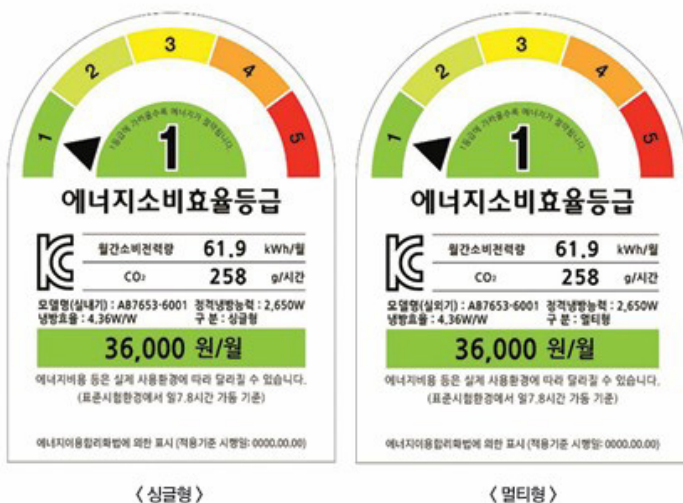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효율관리시험기관으로부터 해당 효율

관리기자재의 에너지 사용량을 측정받고, 그 측정결과에 따라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을 해당 효율관리기자재에 표시해야 합니다(「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제2항 본문 및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제15조제1항 본문).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을 표시할 때에는 해당 라벨에 월간소비전력량, 용량, 1시간 사용 시 CO₂ 배출량, 연간(월간)에너지비용 등을 함께 표시해야 합니다(「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제16조제1항·제2항 및 별표 7 참조).관한 법률」 제86조 본문).

다만, 사망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사체가 처음 발견된 곳에서, 기차나 그 밖의 교통기관 안에서 사망한 경우 그 사체를 교통기관에서 내린 곳에서, 항해일지를 비치하지 않은 선박 안에서 사망한 경우 그 선박이 최초로 입항한 곳에서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 단서).

(예시) 전기냉방기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



03

전기요금을 아낄 수 있다고 해서 집 베란다나 지붕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볼까 고민 중인데, 초기 설치 비용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혹시,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태양광 설비 설치를 고민하고 있다면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사업”을 확인해 보세요.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태양광 설비와 같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실용화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제1항제4호).

“신·재생에너지 설비”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재생에너지”라 함)를 생산 또는 이용하거나 신·재생에너지의 전력계통 연계조건 개선하기 위한 설비로서, 수소에너지 설비, 연료전지 설비, 태양에너지 설비, 풍력 설비, 수력 설비, 지열에너지 설비, 바이오에너지 설비 등 및 그 부대설비를 말합니다(「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 참조).

● 태양광 등 설비 지원사업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을 지원하는 사업의 하나로 주택 및 건물에 태양광(또는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그 범위 및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5-61호) 제21조·제24조 및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https://www.knrec.or.kr>) 참조).

구분	내용	
주택지원 사업	단독주택	기존 또는 신축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공동주택 (기숙사 제외)	기존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입주자 대표 등
		신축 중인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예비입주자 대표 등
건물지원사업	지자체·국가가 소유 관리하는 건물·시설물 및 주택을 제외한 모든 건물 소유자	

지원사업에 참여하려는 신청자는 매년 사업공고에서 정하는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

지원사업의 참여자로 선정되면 태양광 등의 설치를 완료한 후 설치확인을 신청해야 하며, 설치확인이 완료된 후 14일 이내에 보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및 제25조제4항).

보조금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단가에 따라 정액 지원됩니다(「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제1항 본문 참조).

※ 현재 신·재생에너지 설비 지원사업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https://www.knrec.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04

음악 표절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표절”이란 타인의 창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신의 창작물로 허락 없이 사용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작품을 공표하는 것을 말합니다. 표절의 유사성에 대한 판단은 멜로디, 화음, 리듬 및 음악의 형식까지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몇 마디 이상이 동일 한가의 양적인 부분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 표절의 저작권 침해 성립요건

- 표절이 실제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침해자가 저작자의 저작물을 이용하였을 것, 즉 창작적 표현을 복제하였을 것
둘째, 침해자가 저작자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이를 이용하였을 것
셋째, 저작자의 저작물과 침해자의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을 것

- 법원은 음악저작물을 서로 대비하여 그 유사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해당 음악저작물을 향유하는 수요자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음악저작물의 표현에 있어서 가장 구체적이고 독창적인 형태로 표현되는 가락을 중심으로 하여 대비 부분의 리듬, 화성, 박자, 템포 등의 요소도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05

도시지역 주택은 어떤 경우에 빈집으로 추정되나요?

전기나 상수도 등의 사용량이 일정기준 아래인 경우 빈집으로 추정됩니다.

● 도시지역의 빈집등의 추정

- 조사자는 다음의 자료 또는 정보를 취합·분석하여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한 기간의 최초 일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한 주택을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이하 “빈집등”이라 함)으로 추정합니다.

- 전기 사용량
- 상수도 사용량
- 기타 에너지사용량
- 폐공가현황자료

- 빈집등의 추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추정 사용량
전기사용량	✓ 매월 사용량이 최근 12개월 이상 10 kWh 이하인 상태로 지속되는 경우 ✓ 매월 사용량이 최근 12개월 평균 사용량에서 ± 5 kWh 범위에서 지속되는 경우 ✓ 최근 12개월 동안 사용량의 합계가 120 kWh 이하인 경우 ✓ 전기계량기가 사용이 중지된 상태로(사용량 0kWh) 최근 12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 전기계량기가 철거된 경우
상수도사용량	✓ 매월 사용량이 최근 12개월 이상 0(단수)인 상태로 지속되는 경우 ✓ 매월 사용량이 최근 12개월 이상 동일하게 지속되는 경우
기타에너지	위에 준하는 경우
폐공가	-

면세품 구입한도와 면세한도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면세품은 본래 해외에서의 사용을 목적으로 수입통관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되는 물품입니다. 따라서 세금이 유보된 상태에서 판매된 면세품을 국내에 재반입하는 경우 관련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경제·사회정책적 측면을 고려해 일정한 금액이나 수량 이하의 물건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합니다.

● 면세품 구입한도

- 출국하는 내국인의 외국물품 구매한도는 2022년 3월 18일부터 개정되어 한도제한 없이 물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 ✓ 출국하는 내국인에게 보세판매장 물품 판매 한도(미화 5천달러)를 폐지하여 (2022. 3. 18. 시행) 이후 출국하는 내국인은 보세판매장에서 한도 제한없이 물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 면세품 면세한도

- 관세의 면제 한도는 여행자 1명이 국내에 세금 없이 들여올 수 있는 휴대품의 한도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입니다.
- 면세한도는 외국물품 및 내국물품을 포함해 계산하며, 선물 등 무상으로 취득한 물품, 해외에서 구입한 물품 및 국내면세점에서 구입 후 재반입하는 물품 전체를 기준으로 합니다.
- 기본면세한도 외에 다음의 술, 담배, 향수에 대해서도 관세가 면제됩니다.
 - 술 : 용량은 2ℓ 이하, 가격은 미화 400달러 이하
 - 담배 : 쥘련 200개비, 엽권련 50개비, 전자담배(쥘련형 200개비, 니코틴용액 20ml, 기타유형 110그램), 그 밖의 담배는 250g (다만, 두 종류 이상의 담배를 반입하는 경우 한 종류에 한정해 면세됨)
 - 향수 : 100ml

07

개인적 질병 치료를 위한 일주일간의 결근을 무단결근으로 보아 해고하는 것이 정당하나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무단결근을 해고사유나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 이러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를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해고에 해당합니다.

● 무단결근의 판단 기준

- 어떠한 경우를 무단결근한 것으로 취급될 것인가는 무단결근을 징계나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취업규칙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 취업규칙에 결근제 제출 의무를 둔 경우

- 회사의 복무규정 등 취업규칙에서 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결근할 때에는 사전에 결근제를 제출하여 승낙을 받도록 하고, 전화 또는 구두로 사전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사후에 사유서를 첨부한 결근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위 규정에 따른 결근제를 제출하지 않은 이상 실제로 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거나 전화 또는 구두로 신고하여 사전승낙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무단결근으로 취급됩니다.

● 취업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소명자료 제출

- 취업규칙 등에 질병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결근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근로자에게 진실로 질병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인 소명자료를 제시하는 등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사용자 측의 사전 또는 사후승인을 받아야만 결근이 정당하게 됩니다.

● 취업규칙 등에 일정기간 이상의 결근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징계해고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 취업규칙 등에 일정기간 이상의 결근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징계해고사유로 규정

하고 있는 경우 그 의미는 일정한 시간적 제한 없이 합계 며칠 이상의 무단결근을 한 모든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일정한 기간 내에 합계 며칠 이상의 무단결근을 한 경우를 뜻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 회사의 인사위원회규정에 규정되어 있는 징계해고사유인 “7일 이상 무단결근 하였을 때”란 일정한 시간적 제한 없이 합계 7일 이상의 무단결근을 한 모든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기간 동안 누적해서 총 7일 이상의 무단결근을 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08

오래된 휴대전화를 안전하게 폐기하는 방법이 있나요?

네, 폐기할 휴대전화를 수도권자원순환센터에 보내면 휴대폰의 형태가 남지 않도록 파쇄하여 물질별로 자원 재활용을 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도 안되고 환경오염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안전한 폐휴대전화 배출방법

- 더 이상 이용하지 않는 휴대전화를 폐기하면 데이터 복원 등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방지하고 휴대전화에 포함되어 있는 유해물질들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며, 휴대전화의 자원을 재활용하여 자원을 절약하고 추가 자원 채굴로 인한 자연 파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폐기 대상은 폐휴대전화 단말기, 배터리, 충전기이며, 배터리나 충전기만 있는 경우도 배출이 가능합니다.
- 폐기 방법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덕성산단1로 68번길 19(이동면 덕성리 187-5) 수도권자원순환센터 폐휴대폰 담당자 앞”으로 착불 택배 발송하면 됩니다.
- 보내진 폐휴대전화의 자원 재활용으로 발생한 수익금 전액은 기부되며, 처리 과정과 기부금 영수증 발급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 홈페이지(www.나눔폰.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09

주소보정명령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소보정명령서를 가지고 동사무소를 방문해 피고의 주소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법원의 명령서가 있을 경우에는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을 발급해 줍니다.

발급받은 주민등록등본 등을 가지고 주소보정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주소보정서를 제출했음에도 송달이 안 되어 다시 재송달, 특별송달 등의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송달이 되지 않는다면 공시송달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 주소보정

■ 특별송달

- 특별송달은 주말송달, 야간송달, 휴일송달 등으로 송달하는 방법이며, 우편집배원이 아닌 법원의 집행관이 송달합니다.
- 재송달을 했음에도 수취인부재,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는 경우에는 특별송달을 신청합니다.

■ 공시송달

- 원고가 일반적인 통상의 조사를 다했으나 피고의 주소, 거소, 영업소, 사무소와 근무장소, 기타 송달장소 중 어느 한 곳도 알지 못해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하는 송달 방법으로 다른 송달방법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인정되는 최후의 송달방법입니다.

■ 공시송달의 방법

- 법원게시판 게시
- 관보·공보 또는 신문 게재
-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공시

■ 공시송달의 효력

-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 외국에 있는 상대방에 대한 공시송달은 2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10

노동조합의 합법적인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을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가요?

쟁의행위가 정당한 쟁의행위인 경우에는 쟁의행위에 참여한 것을 이유로 징계하고 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례와 같이 근로자가 노동조합이 임금을 목적으로 조합원의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평화적으로 행하는 쟁의행위에 참여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인정받으려면 그 주체, 목적, 절차, 방법이 정당해야 합니다.

● 쟁의행위의 정당성 인정 기준

- 판례에 의하면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①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여야 합니다.
 - ②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 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합니다.
 -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④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 위법한 쟁의행위를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 사례

- 지하철공사 직원이 불법파업에 참가하기 위하여 무단결근을 하고 업무복귀명령에도 응하지 않았다면,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합니다.
- 3차례의 징계전력이 있고, 징계가 유보된 상태에서 2차례에 걸쳐 불법쟁의행위를 주도하고, 회사 부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합니다.

- 근로자들이 연구소장실에 침입하고, 페인트로 연구소장실 입구 벽면 및 복도 등에 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쓰고 같은 내용의 벽보를 부착하는 등 그 정의행위의 방법이나 형태가 사회적 상당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그 정의행위는 부당하고,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유효합니다.



외국어 생활법령정보



교통사고 발생 시 조치 및 책임

※ 다음 정보는 차량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에 관한 것이며, 주로 책임 및 손해배상 등 사고 후 사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 교통사고와 보험 가입 의무

• 교통사고

- “교통사고”란 차량 또는 트램 운전으로 인해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하거나 재산이 손상된 사고를 의미한다(‘도로교통법’ 제54조 1항 참조).

※ 차량 범위

- “차량”이라는 용어는 다음 중 어느 것이든 의미한다(“도로교통법” 제2조 17항 (a)):
 - 자동차
 - 건설 기계
 - 오토바이
 - 자전거
 - 사람이나 가축, 또는 다른 동력으로 도로를 이동하는 다른 차량들(아기 유모차, 보행을 돕는 휠체어, 노인용 보행 지지대 제외).
- “트램”이라는 용어는 “도시 철도법” 제2조 제2항에 언급된 노선을 이용한 도로 위를 운행하는 트램을 의미한다(도로교통법 제2조 17항 2항).

• 법 적용 기준

-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도 형사책임, 민사책임, 행정처분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형법’은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한국인과 외국인 모두에게 적용된다’; 따라서 외국인도 이 법(『형법』 제2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 교통사고와 관련된 책임은 ‘차량 운전자’ 등을 기준으로 규정되며, 국적에 따른 구분은 없습니다(참조: ‘도로교통법’).
 -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은 “개인적으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강제 자동차 책임 보장법” 제3조 참조).
 - 일반 불법행위 책임은 “고의적이든 과실이든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자”에게 부과되며, 국적과 상관없이 적용됩니다(“민사법” 제750조 참조).

● 보험 가입 의무

- 개인 상해 보상을 위한 책임 보험 가입 의무

- 모든 자동차 소유자는 책임 보험을 구매하거나 책임 상호 지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이에 따라 보험사 또는 상호 지원 제공자는 피해자(피해자 사망 시 손해에 대한 배상권을 가진 사람을 의미하며, 이하 동일 권리가 적용됨)에 대해 정해진 한도 내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보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예: 사망 시 1억 5천만원)이 차량 운행으로 인해 타인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경우(『강제차량책임보장법』 제5조 1항 및 『강제차량책임보장법』집행령 제3조 1항과 제2항).

- 재산 피해에 대한 보상을 위한 보험 가입 의무

- 책임보험 가입 또는 책임 상호부조 계약 체결 외에도, 차량 소유자는 타인의 재산이 운전으로 인해 파손되거나 손상된 피해자당 최대 2천만 원을 초과하는 피해 배상 책임을 진다(강제차량책임보장 제5조 2항) 그리고 “강제자동차책임 보장법 집행령” 제3조 3항.

➡ 교통사고 시 취해야 할 조치



● 피해자 지원 조치

- 교통사고 발생 시 차량 운전자 또는 기타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부상자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피해자에게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 1항).

- 교통사고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람(정차 또는 주차 상태의 차량만 손상된 경우 피해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제외)는 5년 이하의 징역 노동 또는 1,500만 원을 넘지 않는 벌금(『도로교통법』 제148조)에 처한다.

● 뺑소니에 대한 가중 처벌

-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라 직업적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교통 중 교통을 통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히고, 형법 제268조에 따른 범죄를 저지르고, 『도로교통법』 제54조 1항에 따라 피해자를 돕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경우, 운전자는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는지에 따라 가중 처벌을 받게 된다(『특범죄 가중 처벌법』 제5조 3항).

※ 뺑소니의 의미

- 법원은 ‘뺑소니’가 피해자가 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부상당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도로교통법’ 제54조 1항에 명시된 의무(예: 피해자 지원 조치 및 개인정보 제공)를 이행하기 전에 현장을 떠나는 상황을 의미한다고 판시했다. 이로 인해 사고를 일으킨 사람을 식별할 수 없게 되었다(2010년 4월 29일 대법원 판결 2010Do1920).

● 추가 교통사고 방지 조치

- 자동차 운전자는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에서 차량을 정차시키고, 뒤에서 접근하는 차량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경고 삼각형을 설치해야 한다(『도로교통법』 제67조 및 『도로교통법』 제40조 1항 및 제3항).

● 교통사고 신고

- 교통사고 발생 시 차량 운전자 등은 현장에 경찰관이 있을 경우 즉시 경찰관에게 사고를 신고해야 하며, 경찰관이 없는 경우 가장 가까운 경찰서(지역 순찰대, 경찰서 또는 경찰 분대 포함)에 신고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 2항 주요 조항).
- 신고 시 운전자 등은 사고 발생 장소, 인명 수와 부상의 심각성, 손상된 물품과 피해 정도, 그리고 취한 기타 조치를 보고해야 한다(『도로교통법』 제54조 2항 1항 부터 4항까지).

- 그러나 차량, 건설 기계, 자전거 등 차량만 손상된 것이 명백하며, 도로 위 위험을 방지하고 원활한 교통 흐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진 경우(도로교통법 제 54조 2항의 단속) 보고서는 필요 없다.
- 교통사고 시 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 취한 조치 등을 보고하지 않는 자는 30만 원을 넘지 않는 벌금 또는 경범죄 징역형(『도로교통법』 제154조 제4항)에 처해진다.

➡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

• 교통사고에 대한 형사 책임

-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교통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부과되는 노동 무부, 벌금 및 기타 처벌을 ‘형사 처벌’이라고 합니다. 적용 가능한 법률로는 『도로교통법』, 『형법』, 『교통사고 합의에 관한 특별사건법』, 『특정 범죄의 가중 처벌법』 등이 있습니다.
- 재산 피해
 - 차량 운전자가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건물이나 물품을 손상시킨 경우, 2년 이하의 무노동징역 또는 500만 원을 넘지 않는 벌금(『도로교통법』 제 151조)에 처해집니다.
- 개인 상해
 - 운전자가 직업적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타인의 사망 또는 상해를 초래한 경우(『형법』 제268조), 운전자는 5년 이하의 무근로징역 또는 2천만 원을 넘지 않는 벌금(『교통사고 합의에 관한 특별사건법』 제3조 1항)로 처벌된다.
- 기소 제도에 대한 예외
 - 교통사고에 연루된 차량이 『보험사업법』, 『여객운송서비스법』, 또는 『트럭운송사업법』에 따라 보험 또는 상호 지원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교통사고 합의에 관한 특별사건법』 제3조 2항의 주요 조항에 해당하는 범죄(예: 직업적 과실로 인한 부상, 중대한 과실로 인한 상해 또는 재산 피해) (“교통사고 합의에 관한 특별 사건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 주요 조항).
 - 그러나 차량이 보험이나 상호 지원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기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1) 사고가 『교통사고 합의에 관한 특별 사건에 관한 법률』 제3조 2항에 따른 중대한 위반(예: 12건의 주요 교통 위반); (2) 피해자의 부상이 생명, 장애 또는 불치병 또는 치료가 어려운 질병을 초래한다; 또

는 (3) 보험 또는 상호 지원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종료되었거나, 보험금 또는 상호 부조 혜택 지급 의무가 면제 사유로 인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교통사고 합의에 관한 특별 사건법 제4조 1항의 선단 사항).

● 민사 책임과 손해배상

- 개인용으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운전 중 타인의 신체 손상이나 재산에 피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참조: “강제 자동차책임보장법” 제3조 및 “민사법” 제750조).
- 그러나 다음 경우 중 어느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강제차량책임보장법’ 제3조 단속):
 - 승객이 아닌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1) 운전 운전자와 운전자가 운전 중에 과실이 없었음이 입증되는 경우; (2) 피해자 또는 운전자와 운전자를 제외한 제3자가 고의적이거나 과실을 저질렀을 경우; 그리고 (3) 차량에 구조적 결함이나 기능 장애가 없었다.
 - 승객이 고의적 행위나 자살로 인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 『강제차량책임보장법』 제3조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손해배상은 『민사법』(『민사법』 제750조부터 제766조 참조)에 의해 규율된다.

➡ 교통사고 시 보험 청구

● 보험사를 통한 손해 배상 처리

-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자동차 소유자나 보험 가입자 등은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을 통해 피해자에게 입은 손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의무보험에 가입한 사람, 의무보험계약 피보험자(이하 ‘보험계약자 등’), 또는 ‘강제차량책임보장법’ 제10조 1항 후반부에 따른 피해자가 청구를 제기하거나, 보험사가 교통사고 환자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다른 방법으로 인지한 경우, 보험사는 교통사고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 기관에 해당 치료비 및 해당 지급 한도를 지급할 의사 여부를 통지해야 합니다(‘강제자동차책임보장법’ 제12조 1항).
- 자발적 보험을 구매한 경우, 사고의 종류와 세부 사항에 따라 보험 청구에 필요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를 신고할 때는 보험사 청구 담당자로부터 보험 청구서와 필요한 서류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보험사는 사고의 특성과 보험 약관(보장 내용)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관련

보험사에 상세한 문의를 해야 합니다 [금융 감독 서비스(www.fss.or.kr) - 금융 상품 거래 단계별 정보 참조].

- 보험 가입자 등이 보험사(이하 “보험회사 등”이라 함)를 포함한 상호부조 제공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지급한 경우, 보험 가입자 등은 보험금 보장 한도 내에서 피해자에게 지급된 금액에 대해 보험사 등에 환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등. (『강제 자동차 책임보장법』 제10조 2항).

※ 교통사고 피해자로서 보험 청구

-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는 보험사 등에 보험금 등을 직접 지급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또한 치료를 제공한 의료기관에 자동차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직접 지급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강제 자동차 책임보장법』 제10조 1항).

● 의무 보험 가입 미가입 사례 등.

- 차량이 의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소유자가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예: 뺑소니 사고, 도난 차량, 소유자가 신원이 밝혀지지 않는 차량에서 물체가 떨어져 발생한 사고 등), 손해 보상은 ‘강제 자동차 책임보장법’ 제30조 1항의 주요 조항인 자동차 사고 보상 보장 프로그램을 통해 제공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정부는 피해자가 청구를 하지 않더라도(‘강제 자동차 책임보장법’ 제30조 1항 조항) 책임보험금 한도 내에서 피해자에 대한 당연직 조사를 실시하고 피해에 대해 보상할 수 있다.

※ 자동차 사고 보상 보장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는 (1) 경찰서에 사고를 신고하고 → (2) 병원 치료를 받→ (3) 교통사고 보상 감독 서비스(https://www.tacss.or.kr/majorproject/gep_03.jsp)에 우편 또는 웹사이트를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정부 보증 프로그램 콜센터(☎1544-0049)로 연락해 주십시오.

Actions and Liability in the Event of a Traffic Accident

※ The following information concerns traffic accidents caused by the driving of a vehicle, and focuses primarily on post-accident matters such as liability and compensation for damages.

➡ Traffic accidents and the obligation to purchase insurance

- Traffic accident

- The term “traffic accident” means an accident in which a person is killed or injured, or property is damaged, due to traffic involving the driving of a vehicle or tram (see Article 54 (1) of 「Road Traffic Act」).

※ Scope of vehicles

- The term “vehicle” means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 17 (a) of Article 2 of 「Road Traffic Act」):
 - Motor vehicles
 - Construction machinery
 - Motorcycles
 - Bicycles
 - Other vehicles moving along the road by the power of humans or cattle, or other motor power (excluding baby carriages, wheelchairs to aid walking, and walking supports for the elderly).
- The term “tram” means a tram referred to in subparagraph 2 of Article 2 of 「Urban Railroad Act」 which moves on a road using tracks (subparagraph 17-2 of Article 2 of 「Road Traffic Act」).

- Criteria for the application of la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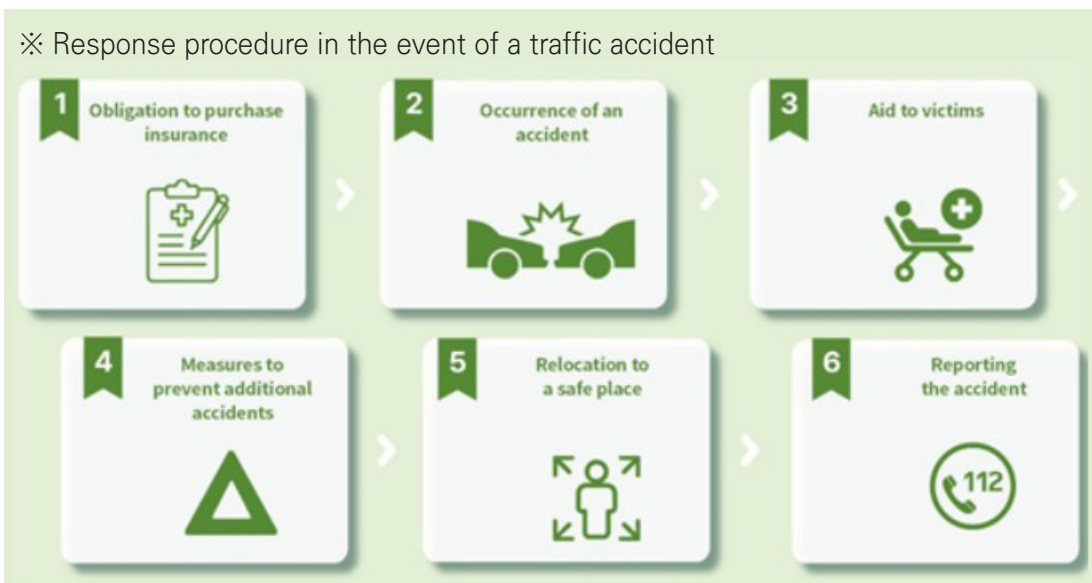
- Even where a foreign national causes a traffic accident in the Republic of Korea, criminal liability, civil liability, and administrative dispositions apply equally.
 - 「Criminal Act」 applies to “both Korean and foreign nationals who commit crimes within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therefore, foreign nationals are also subject to the Act (Article 2 of

- 「Criminal Act」).
- Liability related to traffic accidents is regulated based on the “driver of a vehicle,” etc. under 「Road Traffic Act」, and no distinction is made based on nationality (see 「Road Traffic Act」).
 - Liability for damages resulting from the operation of a motor vehicle is determined based on “a person who operates a motor vehicle for personal use” (see Article 3 of 「Compulsory Motor Vehicle Liability Security Act」).
 - General tort liability is imposed on “a person who, intentionally or negligently, causes damage to another person,” and applies regardless of nationality (see Article 750 of 「Civil Act」).
- Obligation to purchase insurance
 - Obligation to purchase liability insurance for compensation for personal injury
 - Any motor vehicle owner shall purchase a liability insurance policy or enter into a liability mutual aid agreement under which the insurer or mutual aid provider is liable to compensate a victim (referring to a person who has the right to receive indemnification for damage in cases of the death of a victim;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for damages incurred within a prescribed limit (e.g., KRW 150 million in the case of death) where another person dies or is injured due to the operation of the motor vehicle (Article 5 (1) of 「Compulsory Motor Vehicle Liability Security Act」 and Article 3 (1) and (2) of 「Enforcement Decree of the Compulsory Motor Vehicle Liability Security Act」).
 - Obligation to purchase insurance for compensation for property damage
 - In addition to the purchase of a liability insurance policy or entering into a liability mutual aid agreement, a motor vehicle owner shall purchase an insurance policy or subscribe to mutual aid in order to assume liability for compensating a victim for damages, not

exceeding KRW 20 million per accident, where another person's property is destroyed or damaged due to the operation of the motor vehicle (Article 5 (2) of 「Compulsory Motor Vehicle Liability Security Act」 and Article 3 (3) of 「Enforcement Decree of the Compulsory Motor Vehicle Liability Security Act」).

➡ Actions to be taken in the event of a traffic accident

※ Response procedure in the event of a traffic accident



- Measures to aid victims

- In the event of a traffic accident, the driver of the vehicle or any other crew member shall immediately stop and take necessary measures, such as aiding casualties, and provide the victim with personal information, including his or her name, telephone number, and address (Article 54 (1) of 「Road Traffic Act」).
- A person who fails to take necessary measures in the event of a traffic accident (excluding persons who fail to provide personal information to a victim where it is evident that only a motor vehicle in the state of stoppage or parking is damaged)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five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KRW 15 million (Article 148 of 「Road Traffic Act」).

- Aggravated punishment for hit-and-run
 - Where the driver of a motor vehicle, etc. causes death or injury by occupational or gross negligence through traffic involving a motor vehicle, motorcycle, etc. under Article 2 of 「Road Traffic Act」, thereby committing an offense under Article 268 of 「Criminal Act」, and flees without taking measures such as aiding the victim under Article 54 (1) of 「Road Traffic Act」, the driver shall be subject to aggravated punishment depending on whether the victim dies or sustains an injury (Article 5-3 of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of Specific Crimes」).

※ Meaning of hit-and-run

- The court has held that “hit-and-run” refers to a situation in which a driver involved in an accident, despite being aware that the victim was killed or injured as a result of the accident, leaves the accident scene before fulfilling the duties prescribed in Article 54 (1) of 「Road Traffic Act」, such as taking measures to aid the victim and providing personal information, thereby making it impossible to identify the person who caused the accident (Supreme Court Decision 2010Do1920 Decided April 29, 2010).

- Measures to prevent additional traffic accidents
 - The driver of a motor vehicle shall stop the motor vehicle at the right edge of the road and place a warning triangle at a location visible to drivers of motor vehicles approaching from behind (Article 67 of 「Road Traffic Act」 and Article 40 (1) and (3) of 「Enforcement Rule of the Road Traffic Act」).
- Reporting a traffic accident
 - In the event of a traffic accident, the driver, etc. of the vehicle shall report the accident without delay to a police officer if one is present at the scene or, if no police officer is present, to the nearest police station (including an area patrol unit, a police substation, or a police detachment) (main clause of Article 54 (2) of 「Road Traffic Act」).

- When making the report, the driver, etc. shall report the place where the accident occurred, the number of casualties and the severity of injuries, the items damaged and the extent of such damage, and any other measures taken (Article 54 (2) 1 through 4 of 「Road Traffic Act」).
- However, no report is required where it is evident that only vehicles, such as motor vehicles, construction machinery, or bicycles, have been damaged and necessary measures have been taken to prevent danger on the road and ensure smooth flow of traffic along the road (proviso of Article 54 (2) of 「Road Traffic Act」).
- A person who fails to report the measures taken, etc. in the event of a traffic accident subject to the reporting obligation shall be punished by a fine not exceeding KRW 300,000 or by misdemeanor imprisonment (subparagraph 4 of Article 154 of 「Road Traffic Act」).

➡ Liability for traffic accidents

- Criminal liability for traffic accidents
 - Imprisonment without labor, fines, and other penalties imposed on persons who cause traffic accidents or violate traffic regulations are referred to as “criminal punishment.” Applicable laws include 「Road Traffic Act」, 「Criminal Act」,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Settlement of Traffic Accidents」, and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of Specific Crimes」.
- Damage to property
 - Where the driver of a vehicle damages the building or goods of any other person due to negligent disregard or gross negligence, he or she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out labor for not more than two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KRW 5 million (Article 151 of 「Road Traffic Act」).
- Personal injury
 - Where the driver of a vehicle causes a traffic accident through occupational or gross negligence, thereby causing the death of or

injury to another person (Article 268 of 「Criminal Act」), the driver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out labor for not more than five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KRW 20 million (Article 3 (1) of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Settlement of Traffic Accidents」).

- Exception to the institution of prosecution
 - Where the vehicle involved in a traffic accident is covered by insurance or mutual aid under 「Insurance Business Act」, 「Passenger Transport Service Act」, or 「Trucking Transport Business Act」, prosecution may not be instituted against the driver who has committed an offense falling under the main clause of Article 3 (2) of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Settlement of Traffic Accidents」 (such as occupational negligence resulting in injury, gross negligence resulting in injury, or property damage) (main clause of Article 4 (1) of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Settlement of Traffic Accidents」).
 - However, prosecution may be instituted even if the vehicle is covered by insurance or mutual aid if: ① the accident constitutes a serious violation under the proviso of Article 3 (2) of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Settlement of Traffic Accidents」 (such as 12 major traffic violations); ② the victim's injury results in danger to life, disability, or an incurable or intractable disease; or ③ the insurance or mutual aid contract is void or terminated, or the obligation to pay insurance proceeds or mutual aid benefits no longer exists due to a ground for exemption (proviso of Article 4 (1) of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Settlement of Traffic Accidents」).
- Civil liability and compensation for damages
 - A person who operates a motor vehicle for personal use shall compensate for damages where the person causes injury to another

person's body or damage to another person's property during the operation of the motor vehicle (see Article 3 of 「Compulsory Motor Vehicle Liability Security Act」 and Article 750 of 「Civil Act」).

- However, such person shall not be liable for damages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proviso of Article 3 of 「Compulsory Motor Vehicle Liability Security Act」):
 - In cases where a person other than a passenger dies or is injured, where it is proven that: ① the person operating the motor vehicle and the driver thereof were not negligent in its operation; ② the victim or a third party, other than the person operating the motor vehicle and the driver thereof, acted intentionally or negligently; and ③ the motor vehicle had no structural defect or functional disorder.
 - In cases where a passenger dies or is injured due to the passenger's intentional act or suicide.
-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in Article 3 of 「Compulsory Motor Vehicle Liability Security Act」, compensation for damages shall be governed by 「Civil Act」 (see Articles 750 through 766 of 「Civil Act」).

➡ Insurance claims in the event of a traffic accident

- Handling compensation for damages through an insurance company
 - In the event of a traffic accident, a motor vehicle owner or policyholder, etc. may seek compensation for damages to the victim through the automobile insurance policy to which he or she has subscribed.
 - Where a person who has subscribed to mandatory insurance, the insured under the mandatory insurance contr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policyholder, etc.”), or a victim under the latter part of Article 10 (1) of 「Compulsory Motor Vehicle Liability Security Act」 files a claim, or where the insurer becomes aware by any other means that a traffic accident patient has arisen, the insurer shall, without delay, notify the medical institution treating the traffic accident patient of

whether it intends to pay the automobile insurance medical fees for the relevant treatment and the applicable payment limit (Article 12 (1) of 「Compulsory Motor Vehicle Liability Security Act」).

- Where a person has purchased voluntary insurance, the documents required for an insurance claim may vary depending on the type and details of the accident. Accordingly, when reporting the accident, the policyholder should obtain detailed guidance from the insurer's claims representative on the insurance claim form and the required documents. As insurance companies may request additional documents depend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accident and the insurance policy (coverage details), detailed inquiries should be made to the relevant insurance company [se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www.fss.or.kr) – Information by Stage of Financial Product Transactions].
- Where a policyholder, etc. has paid compensation for damages to the victim before the insurance company, including a mutual aid provider (hereinafter referred to as “insurance company, etc.”), pays insurance proceeds, etc., the policyholder, etc. may request reimbursement from the insurance company, etc. for the amount paid to the victim, within the coverage limit of the insurance proceeds, etc. (Article 10 (2) of 「Compulsory Motor Vehicle Liability Security Act」).

※ Filing an insurance claim as a traffic accident victim

- In the event of a traffic accident, the victim may request the insurance company, etc. to pay insurance proceeds, etc. directly to the victim and may also request that an amount corresponding to automobile insurance medical fees be paid directly to the medical institution that provided the treatment (Article 10 (1) of 「Compulsory Motor Vehicle Liability Security Act」).

• Cases of non-subscription to mandatory insurance, etc.

- Where a motor vehicle is not covered by mandatory insurance or the owner cannot be identified (such as in the case of a hit-and-run accident, a stolen motor vehicle, or an accident caused by an object

falling from a motor vehicle whose owner cannot be identified), compensation for damage may be provided through a motor vehicle accident compensation guarantee program (main clause of Article 30 (1) of 「Compulsory Motor Vehicle Liability Security Act」).

- However, the government may conduct an investigation ex officio and compensate the victim for the damage suffered, within the limit of liability insurance proceeds, even if the victim does not file a claim (proviso of Article 30 (1) of 「Compulsory Motor Vehicle Liability Security Act」).

※ Where damage subject to the motor vehicle accident compensation guarantee program occurs, the victim may: ① report the accident to the police station → ② receive hospital treatment → ③ file a claim with the Traffic Accident Compensation Supervisory Service (https://www.tacss.or.kr/majorproject/gep_03.jsp) via mail or through its website. For inquiries, contact the Government Guarantee Program Call Center (☎1544-0049).

Biện pháp xử lý & Trách nhiệm khi xảy ra tai nạn giao thông

※ Nội dung sau đây áp dụng cho các vụ tai nạn giao thông do điều khiển xe ô tô, tập trung chủ yếu vào việc xử lý hậu quả sau tai nạn như quy trách nhiệm và bồi thường thiệt hại sau khi xảy ra tai nạn, v.v..

➡ Tai nạn giao thông và nghĩa vụ tham gia bảo hiểm

- Tai nạn giao thông
 - “Tai nạn giao thông” là việc gây thương tích hoặc tử vong cho người, hoặc làm hư hỏng tài sản do hoạt động giao thông, chẳng hạn như điều khiển xe hay xe điện mặt đất, v.v. (Tham khảo Khoản 1 Điều 54 「Luật Giao thông đường bộ」).

※ Phạm vi của “Xe”

- “Xe” là khái niệm dùng để chỉ một trong các loại phương tiện sau (Mục A Điểm 17 Điều 2 「Luật Giao thông đường bộ」).
 - Xe ô tô
 - Máy móc thi công xây dựng
 - Xe gắn máy
 - Xe đạp
 - Các phương tiện chạy trên đường bộ bằng sức người, sức động vật hoặc các nguồn động lực khác (Tuy nhiên, ngoại trừ xe đẩy trẻ em, xe có ghế ngồi hỗ trợ đi bộ, khung tập đi cho người già yếu, v.v.)
- “Xe điện mặt đất” là loại xe điện chạy trên mặt đất theo quy định tại Điểm 2 Điều 2 「Luật Đường sắt đô thị」 và sử dụng hệ thống đường ray trên đường bộ (Điểm 17.2 Điều 2 「Luật Giao thông đường bộ」).

- Tiêu chuẩn áp dụng pháp luật
 - Người nước ngoài khi gây ra tai nạn giao thông tại Hàn Quốc vẫn bị xử lý bình đẳng như công dân Hàn Quốc về trách nhiệm hình sự, trách nhiệm dân sự và xử phạt hành chính.
 - Bộ luật Hình sự quy định áp dụng đối với “cả công dân trong nước và người nước ngoài phạm tội trong phạm vi lãnh thổ Đại Hàn Dân Quốc”, do đó áp dụng tương tự cho người nước ngoài (Điều 2 「Bộ luật Hình sự」).

- Các trách nhiệm liên quan đến tai nạn giao thông được quy định dựa trên đối tượng là “người điều khiển xe” theo 「Luật Giao thông đường bộ」 và không phân biệt quốc tịch (Tham khảo 「Luật Giao thông đường bộ」).
- Trách nhiệm bồi thường thiệt hại do điều khiển xe được xác định dựa trên đối tượng là “người vận hành xe phục vụ lợi ích của bản thân” (Tham khảo Điều 3 「Luật Đảm bảo bồi thường thiệt hại xe ô tô」).
- Trách nhiệm đối với hành vi vi phạm pháp luật thông thường được xác định dựa theo “người có hành vi cố ý hoặc vô ý gây thiệt hại cho người khác”, và không phân biệt quốc tịch (Tham khảo Điều 750 「Bộ luật Dân sự」).
- Nghĩa vụ tham gia bảo hiểm
 - Nghĩa vụ tham gia bảo hiểm trách nhiệm để bồi thường thiệt hại về người
 - Trong quá trình vận hành xe ô tô gây tử vong hoặc thương tích cho người khác, người sở hữu xe ô tô phải tham gia bảo hiểm trách nhiệm hoặc quỹ bảo trợ trách nhiệm nhằm chịu trách nhiệm chi trả tiền bồi thường thiệt hại trong phạm vi hạn mức nhất định (như đối với trường hợp tử vong là 150 triệu won) cho nạn nhân (nếu nạn nhân tử vong thì là người có quyền nhận bồi thường thiệt hại; áp dụng tương tự cho các nội dung bên dưới) (Khoản 1 Điều 5 「Luật Đảm bảo bồi thường thiệt hại xe ô tô」, Khoản 1 và Khoản 2 Điều 3 「Nghị định thi hành Luật Đảm bảo bồi thường thiệt hại xe ô tô」).
 - Nghĩa vụ tham gia bảo hiểm để bồi thường thiệt hại về tài sản
 - Ngoài tham gia bảo hiểm trách nhiệm hoặc quỹ bảo trợ trách nhiệm, người sở hữu xe ô tô phải tham gia bảo hiểm hoặc quỹ bảo trợ có trách nhiệm chi trả cho nạn nhân khoản thiệt hại phát sinh do tai nạn trong phạm vi 20 triệu won cho mỗi vụ tai nạn, trong trường hợp điều khiển xe làm thất thoát hoặc hư hại tài sản của người khác (Khoản 2 Điều 5 「Luật Đảm bảo bồi thường thiệt hại xe ô tô」 và Khoản 3 Điều 3 「Nghị định thi hành Luật Đảm bảo bồi thường thiệt hại xe ô tô」).

➡ Các bước xử lý khi xảy ra tai nạn giao thông

※ Quy trình ứng phó khi xảy ra tai nạn giao thông



• Biện pháp cứu hộ nạn nhân

- Khi xảy ra tai nạn giao thông, người điều khiển xe hoặc nhân viên phục vụ khác trên xe phải dừng xe ngay lập tức để thực hiện các biện pháp cần thiết (như cứu người bị thương/tử vong, v.v) và cung cấp thông tin cá nhân (họ tên, số điện thoại, địa chỉ, v.v.) cho nạn nhân (Khoản 1 Điều 54 「Luật Giao thông đường bộ」).
- Người không thực hiện các biện pháp xử lý khi xảy ra tai nạn giao thông (ngoại trừ người chỉ gây hư hỏng phương tiện đang dừng/đỗ và không cung cấp thông tin liên hệ cho người bị thiệt hại) sẽ bị phạt tù lên đến 5 năm hoặc phạt tiền hình sự lên đến 15 triệu won (Điều 148 「Luật Giao thông đường bộ」).

• Tăng nặng hình phạt nếu bỏ trốn

- Người điều khiển xe ô tô, v.v. phạm tội vô ý gây chết người hoặc gây thương tích trong khi làm việc hoặc vô ý nghiêm trọng liên quan đến tai nạn giao thông về xe ô tô, xe gắn máy, v.v. theo quy định tại Điều 2 「Luật Giao thông đường bộ」 (Điều 268 「Bộ luật Hình sự」), nếu không thực hiện các biện pháp cứu hộ nạn nhân (Khoản 1 Điều

54 「Luật Giao thông đường bộ」) và bỏ trốn, sẽ bị tăng nặng hình phạt tùy theo hậu quả chấn thương hoặc tử vong của nạn nhân (Điều 5.3 「Luật về Tăng nặng hình phạt đối với các tội phạm cụ thể, v.v.」).

※ Định nghĩa về “bỏ trốn”

- Tòa án quy định rằng hành vi “bỏ trốn” được hiểu là trường hợp người điều khiển xe gây ra tai nạn dù đã nhận thức được việc nạn nhân bị thương hoặc tử vong do tai nạn, nhưng vẫn rời khỏi hiện trường trước khi thực hiện các nghĩa vụ quy định tại Khoản 1 Điều 54 「Luật Giao thông đường bộ」 như cứu hộ nạn nhân, cung cấp thông tin cá nhân, từ đó dẫn đến tình trạng không thể xác định được ai là người đã gây ra tai nạn (Tòa án tối cao tuyên án ngày 29.04.2010, Phán quyết số 2010-Do-1920).

- Biện pháp phòng tránh tai nạn giao thông thứ cấp
 - Người điều khiển xe phải dừng xe ở sát mép đường bên phải, và đặt biển cảnh báo tam giác an toàn tại vị trí mà người điều khiển các xe khác đang đi tới từ phía sau có thể dễ dàng nhìn thấy (Điều 67 「Luật Giao thông đường bộ」 và Khoản 1, Khoản 3 Điều 40 「Thông tư thi hành Luật Giao thông đường bộ」).
- Khai báo tai nạn giao thông
 - Khi xảy ra tai nạn giao thông, người điều khiển xe hoặc người khác có liên quan không được chậm trễ phải khai báo ngay cho cán bộ cảnh sát nếu họ có mặt tại hiện trường. Trường hợp không có cảnh sát tại hiện trường, phải khai báo ngay cho cơ quan cảnh sát gần nhất (bao gồm Trạm Cảnh sát, Đồn Cảnh sát khu vực và Bốt Cảnh sát) (Nội dung chính Khoản 2 Điều 54 「Luật Giao thông đường bộ」).
 - Khi khai báo, phải cung cấp các thông tin bao gồm: nơi xảy ra tai nạn, số người thương vong và mức độ chấn thương, tài sản bị hư hỏng và mức độ thiệt hại, cùng các biện pháp xử lý khác đã thực hiện, v.v. (Điểm 1 đến Điểm 4 Khoản 2 Điều 54 「Luật Giao thông đường bộ」).

- Tuy nhiên, ngoại trừ trường hợp xác định rõ ràng là chỉ có phương tiện như xe ô tô, máy móc thi công xây dựng, xe đạp, v.v. bị hư hỏng và đã thực hiện các biện pháp cần thiết để phòng ngừa nguy hiểm cũng như đảm bảo giao thông thông suốt trên đường thì không phải khai báo (Điều kiện Khoản 2 Điều 54 「Luật Giao thông đường bộ」).
- Người có nghĩa vụ khai báo nhưng lại không khai báo về tình hình xử lý khi xảy ra tai nạn giao thông, v.v. bị phạt tiền hình sự lên đến 300 nghìn won hoặc bị tạm giam (Điều 4 Điều 154 「Luật Giao thông đường bộ」).

➡ Trách nhiệm đối với tai nạn giao thông

- Trách nhiệm hình sự đối với tai nạn giao thông
 - Các hình phạt như phạt tù hoặc phạt tiền hình sự áp dụng đối với người gây tai nạn giao thông và người vi phạm luật giao thông được gọi là “xử phạt hình sự”. Các luật liên quan gồm: 「Luật Giao thông đường bộ」, 「Bộ luật Hình sự」, 「Luật đặc biệt về Xử lý tai nạn giao thông」, 「Luật về Tăng nặng hình phạt đối với các tội phạm cụ thể, v.v.」, v.v.
 - Gây thiệt hại về tài sản
 - Người điều khiển xe do thiếu chú ý trong khi làm việc hoặc do vô ý nghiêm trọng dẫn đến làm hư hỏng công trình xây dựng hoặc các tài sản khác của người khác, sẽ bị phạt tù lên đến 2 năm hoặc phạt tiền hình sự lên đến 5 triệu won (Điều 151 「Luật Giao thông đường bộ」).
 - Gây thiệt hại về người
 - Người điều khiển xe do vô ý trong khi làm việc hoặc vô ý nghiêm trọng gây tai nạn giao thông làm người khác tử vong hoặc bị thương (Điều 268 「Bộ luật Hình sự」), sẽ bị phạt tù lên đến 5 năm hoặc phạt tiền hình sự lên đến 20 triệu won (Khoản 1 Điều 3 「Luật đặc biệt về Xử lý tai nạn giao thông」).
 - Ngoại lệ không khởi tố vụ án (Miễn truy tố)
 - Trường hợp xe gây tai nạn giao thông có tham gia bảo hiểm hoặc quỹ

bảo trợ theo quy định của 「Luật Bảo hiểm」, 「Luật Kinh doanh vận tải hành khách bằng xe ô tô」 hoặc 「Luật Kinh doanh vận tải hàng hóa bằng xe ô tô」, thì không thể khởi tố người điều khiển xe phạm tội thuộc Nội dung chính Khoản 2 Điều 3 「Luật đặc biệt về Xử lý tai nạn giao thông」 (như tội vô ý trong khi làm việc gây thương tích, tội vô ý nghiêm trọng gây thương tích hoặc tội làm hư hỏng tài sản do tai nạn giao thông) (Nội dung chính Khoản 1 Điều 4 「Luật đặc biệt về Xử lý tai nạn giao thông」).

- Tuy nhiên, ngay cả khi có tham gia bảo hiểm, vẫn có thể bị khởi tố nếu thuộc một trong các trường hợp: ① Vi phạm nghiêm trọng theo Điều kiện Khoản 2 Điều 3 「Luật đặc biệt về Xử lý tai nạn giao thông」 (như 12 lỗi vô ý nghiêm trọng, v.v.), hoặc ② Nạn nhân bị thương tích dẫn đến nguy hiểm tính mạng, bị tàn tật hoặc mắc bệnh không thể chữa khỏi/khó chữa, ③ Hợp đồng bảo hiểm/quỹ bảo trợ đã bị vô hiệu, chấm dứt, hoặc phát sinh lý do miễn trách nhiệm dẫn đến việc công ty bảo hiểm không có nghĩa vụ chi trả tiền bảo hiểm/tiền hỗ trợ (Điều kiện Khoản 1 Điều 4 「Luật đặc biệt về Xử lý tai nạn giao thông」).
- Trách nhiệm dân sự và bồi thường thiệt hại
 - Người vận hành xe ô tô phục vụ lợi ích của bản thân khi gây thiệt hại đến thân thể hoặc tài sản của người khác trong quá trình điều khiển xe phải bồi thường cho thiệt hại đó (Tham khảo Điều 3 「Luật Đảm bảo bồi thường thiệt hại xe ô tô」 và Điều 750 「Bộ luật Dân sự」).
 - Tuy nhiên, nếu thuộc trường hợp sau thì được miễn trách nhiệm bồi thường thiệt hại (Điều kiện Điều 3 「Luật Đảm bảo bồi thường thiệt hại xe ô tô」).
 - Trường hợp người không phải là hành khách trên xe bị tử vong hoặc bị thương, và chứng minh được: ① Bản thân và người điều khiển xe đã không lơ là chú ý khi điều khiển xe, ② Lỗi do cố ý hoặc vô ý của chính nạn nhân hoặc của một người thứ ba khác, ③ Phương tiện không có khiếm khuyết về cấu trúc hay lỗi chức năng
 - Trường hợp hành khách trên xe bị tử vong hoặc bị thương do hành vi cố ý hoặc tự sát của chính họ

- Ngoài các trường hợp quy định trong Điều 3 「Luật Đảm bảo bồi thường thiệt hại xe ô tô」, phải bồi thường thiệt hại theo quy định của 「Bộ luật Dân sự」 (Tham khảo từ Điều 750 đến Điều 766 「Bộ luật Dân sự」).

➡ Thủ tục bảo hiểm khi xảy ra tai nạn giao thông

- Giải quyết bồi thường thiệt hại thông qua công ty bảo hiểm
 - Khi xảy ra tai nạn giao thông, người sở hữu xe hoặc người tham gia bảo hiểm có thể giải quyết bồi thường thiệt hại cho nạn nhân thông qua gói bảo hiểm ô tô đã tham gia.
 - Khi người tham gia bảo hiểm theo nghĩa vụ và người được bảo hiểm theo hợp đồng bảo hiểm đó (sau đây gọi là “người tham gia bảo hiểm, v.v.”) hoặc nạn nhân theo quy định trong Phần sau Khoản 1 Điều 10 「Luật Đảm bảo bồi thường thiệt hại xe ô tô」 đưa ra yêu cầu, hoặc phát sinh bệnh nhân cần điều trị do tai nạn giao thông vì bất kỳ nguyên nhân nào khác, thì phải thông báo ngay lập tức cho cơ sở y tế đang điều trị cho bệnh nhân bị tai nạn giao thông đó về việc có đồng ý chi trả chi phí điều trị theo bảo hiểm ô tô hay không, cũng như hạn mức chi trả tối đa (Khoản 1 Điều 12 「Luật Đảm bảo bồi thường thiệt hại xe ô tô」).
 - Trường hợp tham gia bảo hiểm tự nguyện, các giấy tờ cần thiết để yêu cầu bồi thường bảo hiểm sẽ có khác biệt tùy thuộc vào loại hình và nội dung vụ tai nạn, v.v. Do đó, khi khai báo tai nạn với nhân viên phụ trách bồi thường của công ty bảo hiểm, người khai báo cần nhận hướng dẫn chi tiết về mẫu đơn và các giấy tờ cần chuẩn bị. Tùy theo đặc điểm vụ tai nạn và gói sản phẩm (phạm vi bảo hiểm), mỗi công ty bảo hiểm có thể yêu cầu bổ sung thêm các giấy tờ khác nhau. Do đó, để biết thông tin chi tiết, bạn cần phải liên hệ trực tiếp công ty bảo hiểm đã tham gia [Tham khảo Viện Giám sát Tài chính (www.fss.or.kr)
 - Thông tin chính về từng bước giao dịch sản phẩm tài chính].
 - Trường hợp Người tham gia bảo hiểm, v.v. đã chi trả tiền bồi thường thiệt hại cho nạn nhân trước khi công ty bảo hiểm (bao gồm cả đơn vị

kinh doanh quỹ bảo trợ, sau đây gọi là “Công ty bảo hiểm, v.v.”) chi trả tiền bảo hiểm, thì người đó có quyền yêu cầu Công ty bảo hiểm, v.v. hoàn trả lại số tiền mình đã ứng trước cho nạn nhân trong phạm vi hạn mức bồi thường của gói bảo hiểm (Khoản 2 Điều 10 「Luật Đảm bảo bồi thường thiệt hại xe ô tô」).

※ Yêu cầu bồi thường bảo hiểm đối với nạn nhân tai nạn giao thông

- Khi xảy ra tai nạn giao thông, nạn nhân có quyền yêu cầu Công ty bảo hiểm, v.v. chi trả trực tiếp tiền bảo hiểm cho mình, đồng thời có thể yêu cầu chi trả số tiền tương ứng với chi phí điều trị theo bảo hiểm ô tô trực tiếp cho cơ sở y tế đã tiến hành điều trị (Khoản 1 Điều 10 「Luật Đảm bảo bồi thường thiệt hại xe ô tô」).

• Trường hợp không tham gia bảo hiểm theo nghĩa vụ, v.v.

- Trường hợp xe ô tô gây tai nạn không tham gia bảo hiểm theo nghĩa vụ hoặc không thể xác định được người sở hữu (như gây tai nạn rồi bỏ trốn, xe bị trộm cắp, tai nạn do vật thể rơi từ một chiếc xe không rõ chủ sở hữu, v.v.), nạn nhân có thể được bồi thường thiệt hại thông qua “Chương trình bảo đảm bồi thường thiệt hại xe ô tô” (Nội dung chính Khoản 1 Điều 30 「Luật Đảm bảo bồi thường thiệt hại xe ô tô」).
- Tuy nhiên, Chính phủ có thể chủ động điều tra theo thẩm quyền và đứng ra bồi thường thiệt hại mà nạn nhân phải chịu trong phạm vi hạn mức của bảo hiểm trách nhiệm ngay cả khi nạn nhân không đưa ra yêu cầu bồi thường (Điều kiện Khoản 1 Điều 30 「Luật Đảm bảo bồi thường thiệt hại xe ô tô」).

※ Trường hợp phát sinh thiệt hại thuộc đối tượng của Chương trình bảo đảm bồi thường thiệt hại xe ô tô, quy trình thực hiện như sau: ① Khai báo lên Đoàn Cảnh sát → ② Điều trị tại bệnh viện → ③ Nộp hồ sơ yêu cầu bồi thường qua đường bưu điện hoặc qua trang web của Viện Xúc tiến Bồi thường Thiệt hại Xe ô tô (https://www.tacss.or.kr/majorproject/gep_03.jsp); hoặc liên hệ Tổng đài Chương trình Đảm bảo Chính phủ qua số ☎ 1544-00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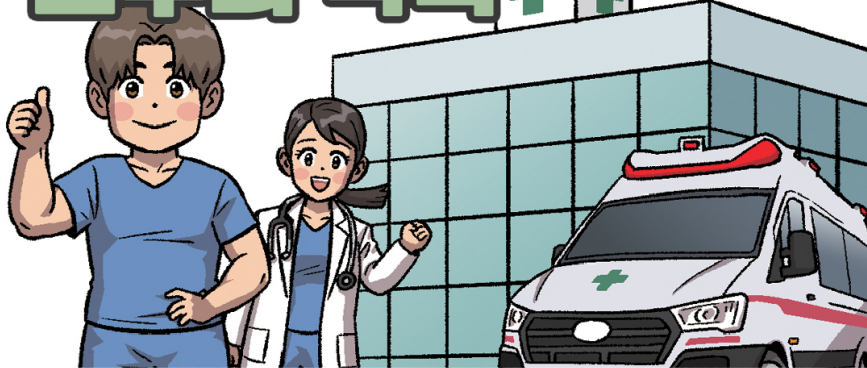
법나들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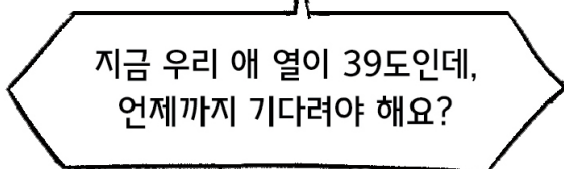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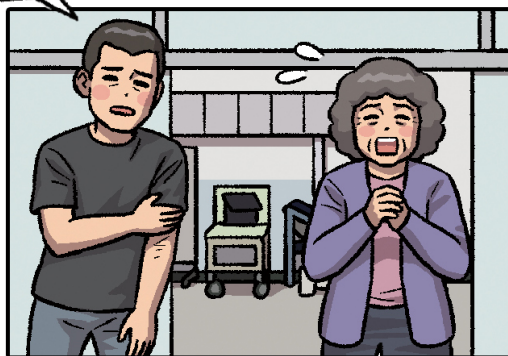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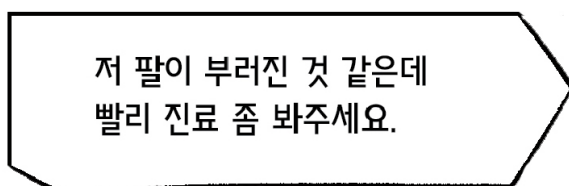




로(law)드맵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6. 24.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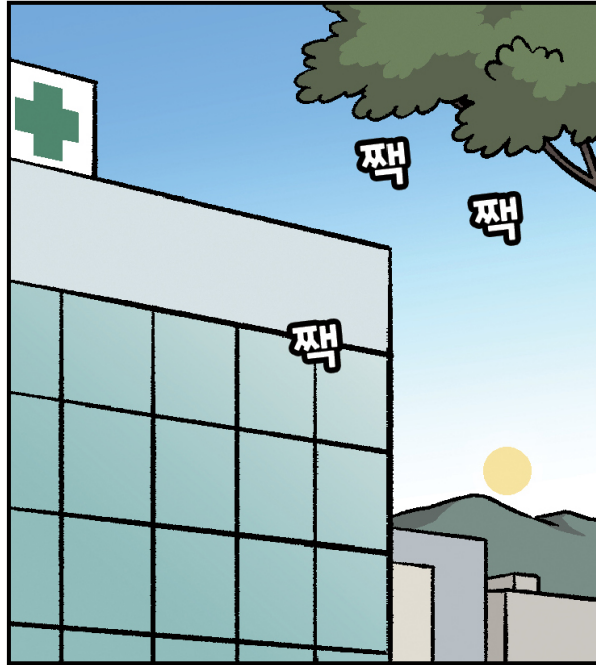
생명을 위한 모두의 약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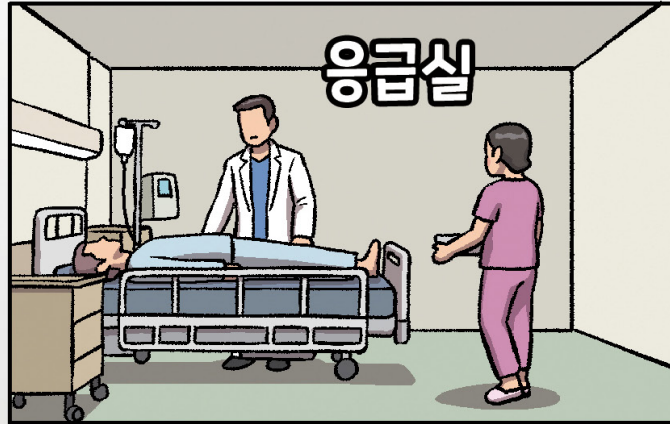








응급의료 조치 방해 금지 대상 행위에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 외에 상담이 추가되었고



응급의료종사자 폭행에 대한 처벌이 적용되는 장소도 외상센터 등 응급의료를 실시하는 응급실 외 장소로 확대했어요.





주요내용

- 응급의료 조치 방해 금지 대상 행위를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 외에 상담을 추가합니다.
- 응급의료종사자가 상해에 이르지 않더라도 피해를 입은 경우 처벌이 가능합니다.
- 응급의료종사자 폭행에 대한 처벌이 적용되는 장소를 독립된 외상센터 등 응급의료를 실시하는 응급실 외의 장소로 확대합니다.
-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규정을 강화합니다.

